

공개용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1차) 최종판정

(조사번호 : 구제 23-2024-4호)

2025. 2. 20.

무 역 조 사 실

< 목 차 >

I. 재심사 개요	1
1. 요청인 및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	1
2. 재심사대상물품	3
3. 국내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간 동종물품 여부	7
4.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요청 및 검토	9
5.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	11
6.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산업현황 및 수급현황	15
7. 비밀취급 여부 검토	19
II.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23
1. 덤핑사실	25
2. 수입물량의 변동	27
3.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28
4. 제3국 수입규제조치 현황	29
5.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검토종합	31
III.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33
1. 재심사대상물품의 누적적 평가 여부	33
2.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36
3.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국내산업피해의 전망	50
4.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56
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검토종합	58
IV. 가격약속 제외 내용 및 검토	59
1. 가격약속 제외 내용	62
2. 가격약속 제외에 대한 국내생산자 의견	64

3. 가격약속 제의에 대한 검토	64
4.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71
V. 가격약속 및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73
1. 가격약속 및 최종덤핑률	73
2.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	74
3. 가격약속 및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75
VI. 무역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	76

< 참고자료 >

참고1. 산업피해조사 경과	78
참고2. 덤핑조사 및 가격약속 제의 경과	80

< 붙임자료 > : 별책

붙임 1. 재심사 게시 공고문	별책
붙임 2. 1차 공청회 공고문	별책
붙임 3. 1차 공청회 속기록	별책
붙임 4. 1차 공청회 발언요지(조치연장 주장측)	별책
붙임 5. 1차 공청회 발언요지(조치종료 또는 변경 주장측)	별책
붙임 6. 1차 공청회 이후 의견서(조치연장 주장측)	별책
붙임 7. 1차 공청회 이후 의견서(조치종료 또는 변경 주장측)	별책
붙임 8. 2차 공청회 공고문	별책
붙임 9. 2차 공청회 속기록	별책

붙임 10. 2차 공청회 발언요지(조치연장 주장측)	별책
붙임 11. 2차 공청회 발언요지(조치종료 또는 변경 주장측)	별책
붙임 12. 2차 공청회 이후 의견서(조치연장 주장측)	별책
붙임 13. 2차 공청회 이후 의견서(조치종료 또는 변경 주장측)	별책
붙임 14. 부과제의 관련 의견서	별책
붙임 15. 국내생산자 현지실사 결과보고서	별책
붙임 16. 재심사대상공급자 가격약속 실사 결과보고서	별책
붙임 17. 가격약속 실사에 대한 의견서	별책
붙임 18. 최종 덤핑률 및 가격약속 이해관계인 회의 의견서	별책

* 붙임자료 별책 목록에 포함된 이해관계인 발언요지 및 제출의견(공개요약본)은,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7항(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중 비밀취급 자료를 제외한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서면신청 방법 규정)에 따라 공개본을 요청한 이해관계인에게는 이미 제공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에 서면(공문 형식)으로 열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실사결과보고서, 속기록은 비공개

안내 사항

< 비밀취급 자료 관련 >

○ 신청인 등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 관세청 수입통계 자료, 정보유통기업의 유료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국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등은 아래와 같이 기준년도 값을 설정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증감률을 반영한 환산값을 제시하되, 기준 연도 값과 환산값은 본문과 표에 "12,345"(기울임, 밑줄)의 형태로 표시함

- 기준년도 값 : 1,000

○ '가격 차이' 자료는 공개될 경우, 상대방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을 표시함

○ 시장점유율, 국내 동종물품 가동률, 물량 비중, 원가구성비 등 비율(%)로 표시되는 자료는 공개하지 않되, 증감률(%의 경우에는 %p로 표시)을 표시함

- 예 : 10.0% → 15.0%로 증가한 경우 5.0%p로 표시

○ 기준연도 값이 음의 부호('△')인 경우에는 '적자'로 표시하고 다음 연도에는 '적자 확대', '흑자 전환' 등으로 표시함

I. 재심사 개요

1. 요청인 및 재심사대상물품 공급자

가. 요청취지

- '24.3.13. (주)포스코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시 동 물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수 있으므로 덤핑방지 조치를 연장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함

나. 요청인

- 요청인: 주식회사 포스코

-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변호사 정영진, 김성중, 회계사 조노석)

('23년 기준)

구분	요청인	(주)포스코
회사설립 연·월·일		2022.3.2
대표자		김 학 동 ¹⁾
주 소	본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공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자본금		482,403백만원
매출액	총매출액	38,971,567백만원
	동종물품	xxx백만원
주요 생산제품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등 철강재
종업원수		18,150명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포항제철 창립일은 1968.4.1.이나 2022.3.1.을 분할기일로 하여 철강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후 사명을 (주)포스코로 하는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존속법인인 포스코홀딩스(주)의 종속법인이 됨

1) '23년 12월 31일 기준 대표자는 김학동이나 '24년 2월 이후 대표자는 이시우임

다.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 및 공급자

공급국	공급자	요청인 제시 덤핑률(%)
중국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가. 텐진타이강(Tianjin Taigang & TPCO Stainless Steel Co., Ltd.) 나. 산시정밀(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Precision Strip Co. Ltd.)	23.69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25.82
	그 밖의 공급자	24.83
인도 네시아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과 그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가. 광칭(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나. 루이푸(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25.82
	그 밖의 공급자	25.82
대만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와 관계사인 다음 각 목의 기업 가. 이에마우(Yieh Mau Corp.) 나. 탕영(Tang Eng Iron Works Co., Ltd.)	9.47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	7.17
	그 밖의 공급자	9.07

○ 재심사대상공급자의 대리인

- 산시타이강 : 법무법인 대륙아주(변호사 이상봉, 석지윤, 황규민, 오예진)
- 리스코, 유스코, 왈신 : 법률사무소 신아(변호사 심규황),
주식회사 리인타(공인회계사 김동준)
- 인니청산 : 텐톤스 리 법률사무소(변호사 장영철),
주식회사 리인타(공인회계사 김태익)

라. 덤핑방지조치 경과

- '21.9.15. :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원심)
 -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기간 : '21.9.15.~'24.9.14.(3년)
 - 덤핑방지관세율 : 7.17% ~ 25.82%

마. 재심사대상기간

- 덤핑률 재심사대상기간 : '23. 1. 1. ~ '23. 12. 31.
- 산업피해 재심사대상기간 : '20. 1. 1. ~ '23. 12. 31.

2. 재심사대상물품

가. 품명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 관세품목분류(HSK) :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90, 7220.90.9000
- 관세율 : 기본관세율 8.0%, WTO 협정세율 : 0%

나. 재심사범위

○ 스테인리스강²⁾ 평판압연 제품³⁾

다만, 아래 제품은 제외함

- 아 래 -

- 두께가 8mm를 초과하는 제품
-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⁴⁾ 및 N08367⁵⁾강종의 제품
-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는 무관)이며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200계 제품⁶⁾
- 폭 2,000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 316 또는 316L강종으로 두께가 3.0mm 이상 4.0mm 이하이면서 폭 1,524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 중국국가표준(GB) 2Cr13, 3Cr13, 4Cr13, 6Cr13 강종으로 두께 3mm 이하이면서, 폭 400mm 이하인 경도 HV250 이상 350 이하의 제품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 탄소(C)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일 것,
 - 규소(S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이상 0.6% 이하일 것,
 - 망간(M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9이상 1.30%이하일 것,

2)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롬(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함(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음)

3) 평판압연제품이란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음

- 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이거나
-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함

따라서, 열간압연제품과 냉간압연제품을 모두 포함하며, 열처리, 산세처리, 도금·페인팅 등 표면 처리, 트리밍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사대상물품에 포함됨.

4) 크롬 20%, 니켈 18%, 몰리브덴 6%, 질소 0.2%의 화학성분(20Cr-18Ni-6Mo-0.2N)을 가지며 해수 또는 탈황설비 등 고내식 환경에 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강.

5) 크롬 20%, 니켈 25%, 몰리브덴 6%, 질소 0.2%의 화학성분(20Cr-25Ni-6Mo-0.2N)을 가지며 해수 또는 탈황설비 등 고내식 환경에 사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강.

6)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4.101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4.101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5.1010호, 제7219.90.101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2.1010호, 제7220.20.1010호 또는 제7220.90.101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인(P)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3% 이하일 것,
- 황(S)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5% 이하일 것,
- 니켈(N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이상 11.5%이하 일 것,
- 크롬(Cr)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8.0이상 19.5%이하 일 것,
- 몰리브덴(Mo)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0% 이하일 것,
- 구리(Cu)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 이하일 것,
- 질소(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5% 이하일 것,
- 두께가 0.34mm 이상 0.36mm 이하일 것

다. 물리적 특성

- 철, 크롬, 니켈, 몰리브덴, 탄소 및 기타 화학 성분의 일정한 조합으로 구성되며, 내식성, 내열성, 저온강도, 내산화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라. 용 도

- 자동차, 조선, 항공, 화학, 플랜트, 전자·가전·의료기기, 저장탱크·열교환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내외장재, 식기, 주방용품 등 소비재의 핵심 소재로 폭넓게 사용됨

마. 제조공정 및 제조방법

- 슬라브 제조 : 주원료인 니켈, 크롬, 스크랩 등을 전기로에서 용해하여 정련한 후 주형(Mold)에 주입하여 응고시켜 열간압연이 가능한 크기로 절단하여 슬라브를 제조
- 블랙코일 및 화이트코일 제조 : 슬라브를 가열(1,100~1,300℃)한 후 후공정에서 요구하는 두께로 압연하여 블랙코일기를 생산하며 블랙코일을 연속 소둔(燒鈍)⁸⁾ 및 산세(酸洗)처리⁹⁾하여 화이트코일 생산
- 냉간압연 등 추가가공 : 화이트코일을 상온에서 냉간압연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두께, 품질, 특성 등을 확보하고 소둔 및 산세처리, 조질압연¹⁰⁾, 형상교정¹¹⁾ 등 추가 공정을 거쳐 강종별 가공성과 표면 광택성 등을 확보한 추가가공 제품 생산

7) '블랙코일' 단계에서부터 조사대상물품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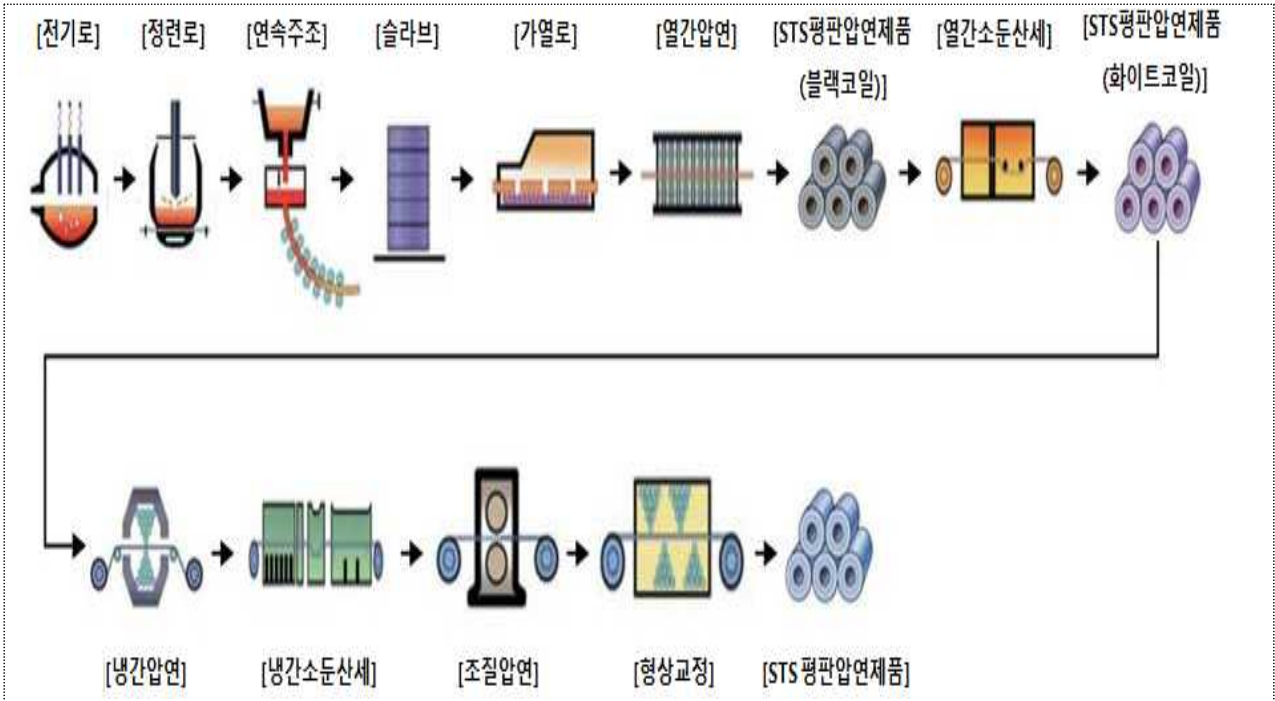
8) 소둔(어닐링, Annealing, 풀림) : 압연공정 등으로 경화된 강의 조직을 연화시켜 가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열한 후 서서히 다시 냉각시키는 열처리 공정

9) 산세(피클링, Pickling, 씻어냄) : 표면에 생성된 스케일(Scale)을 제거하는 공정

10) 코일 형상제어 및 표면 광택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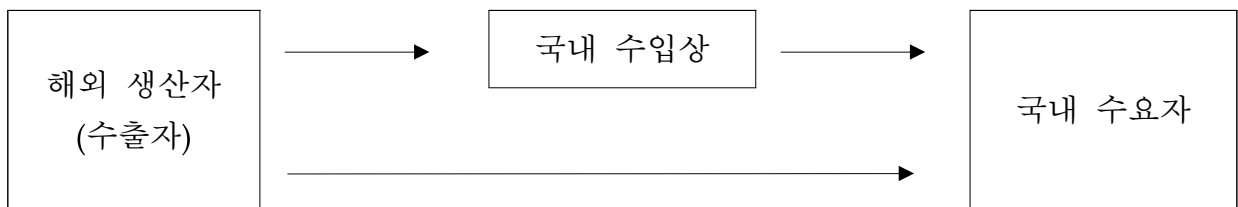
11) 코일 양끝단에 장력을 부여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평탄도 확보.

< 제조공정 >



바. 유통경로

- 국내 수입상이 재심사대상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국내 수요자가 직접 수입함



3. 국내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간 동종물품 여부

< 검토할 사항 >

-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또는 기능, 특성 및 구성요소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조사대상물품과 경쟁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동종물품의 범위를 정함

관 련 법 규

-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 ① 영 제59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가. 품명 및 정의 :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일

나. 물리적 특성 및 구성요소 :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함

-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철, 크롬, 니켈, 몰리브덴, 탄소 및 기타 화학 성분의 일정한 조합으로 구성되며,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시험결과표를 비교한 결과 주요 물리적 특성이 동등 또는 유사한 것으로 조사됨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의 물리적 특성 비교>

시험항목	단위	중국산		인도네시아산		대만산		국내생산품	
		화이트 코일제품	냉간압연 제품	화이트 코일제품	냉간압연 제품	화이트 코일제품	냉간압연 제품	화이트 코일제품	냉간압연 제품
인장강도	N/mm ²								
내력 (항복강도)	N/mm ²								
연신율	%								
경도	Hv								

* 자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분석 시험결과보고서(“24.1.19), 국내생산자 답변서

다. 용도 :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함

- 국내생산자는 자동차, 조선, 항공, 화학, 플랜트, 전자·가전·의료기기, 저장탱크·열교환기 등 산업용 기계부품,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내외장재, 식기, 주방용품 등에 사용되어 국내생산품과 재심사대상물품은 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보임

라. 제조공정

-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제조공정이 동등 또는 유사함
 -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동종물품은 제강, 압연, 소둔산세를 거치는 근본적인 제조방법에 차이가 없으며, 고로방식, 전기로방식 등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제품의 동종성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마. 유통경로

-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생산품은 모두 최종수요자에 대한 직거래 방식과 대리점(수입자) 단계를 거치는 두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음

바. 품질 및 소비자 평가 :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함

사. 검토 종합

- 조사실 검토 결과, 재심사대상물품은 국내생산품과 비교하여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 제조공정 및 유통경로가 동등 또는 유사하며, 품질 및 소비자평가에서도 특별한 차이가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국내시장에서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물품으로 판단됨

4.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요청 및 검토

관련 법규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 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제 2022-2호) 제22조(부과제외대상물품의 결정기준) ①이해관계인으로부터 조사대상물품에 포함되는 특정 제품을 덤핑방지조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요청에 대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또는 여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당해 요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판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2. 국내산업이 부과제외요청물품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3. 부과제외요청물품의 국내 수급상황
4. 기타 합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항

1) S31803, S32205, S32750 강종의 제품

- (제외요청) (주)세진튜브텍은 ASTM¹²⁾ 규격 S31803, S32205, S32750 강종의 경우 소량 수요제품으로 요청인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요청인 의견) 상기 강종의 소량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부과제외에 동의함
- (조사실 검토) 상기 강종의 소량 수요에 대해 요청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심 요청인이 부과제외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12)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2) S32050 강종의 제품

- (제외요청) (주)유봉은 ASTM 규격 S32050 강종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불가하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요청인 의견) 상기 강종은 요청인의 미생산 제품이고, 원심 조사대상 물품에서 제외된 S31524, N08367 강종과 유사한 강종이므로 부과제외에 동의함
- (조사실 검토) S32050 강종은 재심 요청인이 생산하고 있지 않고, 원심 조사대상물품에서 제외된 S31524, N08367 강종과 유사한 강종이며, 재심 요청인이 부과제외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3) NBR 코팅제품

- (제외요청) (주)코리아셀팩은 두께 0.2mm의 특정* 스테인리스강 냉간 압연제품의 양면에 0.05mm의 NBR¹³⁾이 코팅된 제품이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지 않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함
- * 전체 중량에서 탄소(C) 0.15%이하, 크롬(Cr) 16~18%, 망간(Mn) 2% 이하, 질소(N) 0.1% 이하, 니켈(Ni) 6~8%, 인(P) 0.045% 이하, 황(S) 0.03% 이하, 규소(Si) 1% 이하인 것
- (요청인 의견) 상기 제품은 요청인 미생산 제품이므로 부과제외에 동의함
- (조사실 검토) 상기 제품은 재심 요청인이 생산하고 있지 않고, 재심 요청인이 부과제외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13)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Nitrile Butadiene Rubber) : 일회용장갑, 시트, 케이블, 호스,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에 사용됨

5.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및 국내산업의 범위

가. 국내생산자

- 국내생산자는 (주)포스코, 현대비앤지스틸(주), (주)대양금속, 현대제철(주) 등 12개 업체임

('23년 기준)

국내생산자	생산량(톤)	비 중	답변서 제출여부
(주)포스코		80%대	제출
현대비앤지스틸(주)		10% 미만	미제출
(주)대양금속		10% 미만	공개본 미제출 ¹⁴⁾
현대제철(주)		10% 미만	미제출
(주)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10% 미만	미제출
(주)풍산특수금속		10% 미만	미제출
(주)세니트		10% 미만	미제출
(주)코리녹스		10% 미만	미제출
(주)대한특수강			
(주)삼신금속			
보성금속(주)			
(주)코메론			
총계		100.0%	

* 자료: 국내생산자 답변서 및 철강세라믹과의 재심 요청 관련 제출 공문

14) 대양금속은 답변서 비공개본은 제출하였으나, 공개본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에 의거 당해 자료를 조사에 참고하지 않음

나. 수입자

- xxx, xxx, xxx, xxx, xxx, xxx 등이 있음

다. 수요자

-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등이 있음

라. 국내산업의 범위

< 검토할 사항 >

-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확인
- 국내생산자가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 국내생산자가 수입자이거나, 외국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에서 제외할 수 있음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59조제4항
 - ④ 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② 영 제59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 ③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내생산자

- 해당 산업의 주무부서(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에 확인한 결과, 국내 동종물품의 생산자는 (주)포스코, 현대비앤지스틸(주), (주)대양금속, 현대제철(주) 등 12개사임

2) 국내산업의 범위

- 조사실은 국내생산자 12개 기업에 모두 '국내생산자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주)포스코는 답변서 공개본 및 비공개본을 모두 제출함
 - (주)대양금속은 답변서 비공개본은 제출하였으나, 공개본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주)대양금속 제출자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15)에 의거 조사에 참고하지 않음
- (주)포스코는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심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재심사대상물품의 공급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국내산업의 범위에 포함됨
- (주)포스코의 동종물품 생산량 합계가 국내 총생산량의 80%대에 해당하여 상당 부분을 점하므로, 국내산업 피해유무 조사에서 “국내산업”은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주)포스코의 동종물품 생산사업으로 함

15)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산업현황 및 수급현황

가. 개관

-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은 철, 크롬, 몰리브덴, 탄소 및 기타 화학 성분의 일정한 조합으로 구성되며, 공통적으로 내식성, 내열성, 저온강도, 내산화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스테인리스 강은 원료 함량과 조직특성에 따라 200계, 300계, 400계로 구분
 - 300계는 주 원료인 니켈과 크롬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성능이 우수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200계는 니켈 함량이 1~4%로 내식성이 열위하여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며, 400계는 니켈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300계에 비해 성능면에서 열위하지 않고 경제성이 우수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용도는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품, 섬유, 의료기기, 저장탱크, 비료/염료/제지설비, 열교환기/핵융합반응로/터빈/모터/보일러/탈황설비 등 기계 부품, 핵처리/핵융합로, 해안시설물, 엘리베이터/싱크 등 건축내외장재 등 산업재로 사용될 뿐 아니라 식기, 주방, 욕실 용품, 핸드폰 등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음

나. 세계시장 동향

- 전세계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수출은 '20년 13,665천톤에서 '21년 16,564천톤으로 증가하였으나, '22년 15,270천톤, '23년 13,925천톤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0.6% 감소함
- 재심사대상국(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의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수출시장 점유율은 '20년 36.9%에서 '23년 45.7%로 증가하였음
- '23년 기준 수출시장점유율은 중국이 21.7%로 1위, 인도네시아가 19.1%로 2위를 차지함

<전세계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수출 현황>

(단위 : 톤, %, %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중국	물량	2,498	3,426	37.2	3,502	2.2	3,023	△13.7	6.6
	비중	18.3	20.7	2.4	22.9	2.3	21.7	△1.2	3.4
인도 네시아	물량	1,815	2,918	60.8	2,831	△3.0	2,665	△5.9	13.7
	비중	13.3	17.6	4.3	18.5	0.9	19.1	0.6	5.9
대만	물량	728	1,020	40.0	872	△14.5	672	△23.0	△2.7
	비중	5.3	6.2	0.8	5.7	△0.4	4.8	△0.9	△0.5
재심사 대상국	물량	5,041	7,364	46.1	7,205	△2.1	6,360	△11.7	8.1
	비중	36.9	44.5	7.6	47.2	2.7	45.7	△1.5	8.8
전세계	물량	13,665	16,564	21.2	15,270	△7.8	13,925	△8.8	0.6

* 자료: ITC(International Trade Centre) 무역통계 중 HS Code 721912, 721913, 721914, 721922, 721923, 721924, 721931, 7219.32, 721933, 721934, 721935, 721990, 722011, 722012, 722020, 722090의 합

- SMR¹⁶⁾자료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 슬라브의 재심사대상국 생산능력이 '20년 xxx백만톤에서 '23년 xxx백만톤으로 연평균 13.0% 증가하고, 가동률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17.2%p 하락함

<스테인리스강 슬라브 생산능력, 생산량>

(단위 : 천톤, %, %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중국	생산능력(a)		6.4	9.8	19.9	11.9
	생산량(b)		5.5	△4.4	6.6	2.5
	가동률 (b/a)		△0.6	△9.6	△7.1	△17.3
인도 네시아	생산능력(a)		38.3	32.5	18.2	29.4
	생산량(b)		34.8	32.3	△12.2	16.1
	가동률 (b/a)		△2.0	△0.2	△19.2	△21.3
대만	생산능력(a)		0.0	0.0	0.0	0.0
	생산량(b)		19.2	△22.0	△21.9	△10.1
	가동률 (b/a)		7.5	△10.2	△8.0	△10.7
재심사 대상국 합계	생산능력(a)		8.5	11.6	19.2	13.0
	생산량(b)		7.9	△1.2	3.8	3.4
	가동률 (b/a)		△0.4	△8.5	△8.4	△17.2

* 자료: SMR의 스테인리스강 슬라브 생산능력, 생산 현황 자료

16) SMR(Steel & Metals Market Research)는 '94년 설립되어 현재 오스트리아에 소재하고 있으며, 철강 및 금속산업에 대한 글로벌 전문 시장조사 리서치 기관으로 국내외 관련 업계에서 주요 리서치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음

다. 국내시장 수급현황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수요는 '23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내소비가 xxx톤으로 xxx%, 해외소비(수출)가 xxx톤으로 xxx%를 차지
-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공급은 '23년 기준으로 xxx톤이며, 이중 국내공급이 xxx톤으로 xxx%, 해외공급(수입)이 xxx톤으로 xxx%를 차지

< 국내수급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 요	국내소비 (국산품 내수 + 총수입)	물량	<u>1,000</u>	<u>1,018</u>	1.8	<u>836</u>	△17.9	<u>830</u>	△0.6	△6.0
		금액	<u>1,000</u>	<u>1,242</u>	24.2	<u>1,424</u>	14.6	<u>1,230</u>	△13.6	7.1
	수출 (국산품 수출)	물량	<u>1,000</u>	<u>845</u>	△15.5	<u>506</u>	△40.1	<u>712</u>	40.8	△10.7
		금액	<u>1,000</u>	<u>1,059</u>	5.9	<u>851</u>	△19.6	<u>967</u>	13.6	△1.1
합 계		물량	<u>1,000</u>	<u>951</u>	△4.9	<u>708</u>	△25.5	<u>785</u>	10.8	△7.8
		금액	<u>1,000</u>	<u>1,179</u>	17.9	<u>1,227</u>	4.1	<u>1,140</u>	△7.2	4.5
공 급	국내공급 (국산품 내수 +수출)	물량	<u>1,000</u>	<u>1,082</u>	8.2	<u>757</u>	△30.0	<u>826</u>	9.1	△6.2
		금액	<u>1,000</u>	<u>1,365</u>	36.5	<u>1,296</u>	△5.1	<u>1,169</u>	△9.8	5.3
	수입 (총수입)	물량	<u>1,000</u>	<u>670</u>	△33.0	<u>603</u>	△10.1	<u>697</u>	15.5	△11.4
		금액	<u>1,000</u>	<u>801</u>	△19.9	<u>1,088</u>	35.9	<u>1,080</u>	△0.7	2.6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7. 비밀취급 여부 검토

< 검토할 사항 >

- 비밀취급 요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비밀취급 요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줄 것을 요청했는지 여부
-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비밀취급 요청인이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상세한 요약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규

-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1항, 제8항 후단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중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해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를 제출한 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당해 자료의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료를 제출한 자가 그 요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제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이 아닌 요약서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자료를 참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세법시행규칙 제15조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제조원가
 2. 공표되지 않은 회계자료
 3. 거래처의 성명·주소 및 거래량
 4. 비밀정보의 제공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관련 법규

- WTO 반덤핑협정 제6.5조
 성격상 비밀인 정보 (예를 들어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되거나 정보 제공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된 자에게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하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1조
 당국은 비밀정보를 제공한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5.2조
 당국이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정보의 제공자가 그 정보의 공개나 일반화된 또는 요약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인가할 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이 적절한 출처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

가. 비밀취급 요청 서류

1) 이해관계인 제출서류

- (요청인) 조사신청서, 국내생산자 답변서, 의견서 등
- (피요청인) 공급자 답변서, 의견서 등
- (이해관계인) 수입자 답변서, 수요자 답변서, 의견서 등

2) 정부 서류

- 본 최종보고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나. 이해관계인 제출서류의 정당한 비밀취급 사유 제출 여부

- (요청인)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 (피요청인)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 (이해관계인) 비밀취급 요청 서류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였음

다. 비밀취급 자료 공개시 제출자 및 이해관계인 이익의 침해우려 여부

- (요청인) 생산현황 및 생산능력, 판매 및 재고현황, 판매가격,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제조원가, 고용 및 임금,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원재료 가격 등 공표되지 않은 내부 회계자료와 기타 거래처 정보, 유료 구매자료 등은 영업상의 비밀 및 정보공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국내생산자의 경쟁력 저하 또는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요청함
- (피요청인) 생산현황, 판매 및 재고현황, 손익 및 재무상태, 제조원가, 연구개발 및 투자, 고용 및 임금현황 등 공표되지 않은 내부 회계자료와 기타 거래처 정보 등은 영업상 비밀 및 정보공개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피요청인에게 영업상 불이익 등의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비공개를 요청함
- (이해관계인) 매출액, 수입실적, 통관비용, 판매실적, 가동률, 재고량, 거래업체 등 자료를 영업상 비밀자료로서 비공개 요청했으며, 해당 자료에 대해 비공개본 및 공개본을 제출하였음
- (조사실 검토) 조사실은 비밀취급 요청자료는 공개될 경우 경쟁자들이 해당 정보를 직접 영업에 활용하는 등 자료 제출자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국내생산자, 피요청인 및 이해관계인이 비밀취급을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함
 - 제출된 자료 중 판매현황, 가격, 원가, 기타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 등은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비추어 성질상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해당함

라. 비밀취급 자료의 요약서 제출 여부

- 비밀취급 요청 서류를 제출한 자들은 모두 비밀이 아닌 요약서로 비밀취급 요청 서류의 공개본을 제출하였음
- 특히, 국내생산자는 비밀 취급한 정보(재심사대상물품의 국내소비 점유율, 수입물량, 수입금액, 요청인의 생산능력, 생산량, 가동률, 판매 등)에 대해 재심사 대상기간 지수화된 자료 내지 증감률 정보를 제공하고 그 추세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였음

마. 기타

- 수입 관련(물량, 금액, 거래내역, 거래처 등) 자료는 개별기업의 영업비밀(무역거래) 자료로 공개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비밀로 취급함

II.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 검토할 사항 >

- 덤핑방지조치(덤핑방지관세부과 또는 약속)가 종료될 경우, 덤핑이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관련 법규

- 관세법 제56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관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
 -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및 제11.5조
 - 당국이 덤핑방지조치의 종료일자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일자 이전 합리적인 기간내에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재심사에서 관세부과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8조에 따라 수락된 가격약속에도 준용된다.

○ WTO 반덤핑협정 제6.7조

- 당국은 관련 기업의 동의를 얻고 당해 회원국의 정부대표에게 통보하여 이러한 회원국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공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또는 상세 사항을 추가로 입수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른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속서 1에 기술된 절차는 다른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행해지는 조사에 적용된다. 당국은 비밀정보 보호요건을 조건으로,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관련 기업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동 결과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 WTO 반덤핑협정 제6.8조

-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 WTO 반덤핑협정 제6.8조에 따른 부속서2

- 5. 이해당사자가 능력에 따라 최선을 다하였다면 비록 제공되는 정보가 모든 면에서 이상적이지 아니하더라도 이것은 당국이 이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여서는 아니된다.
- 6. 증거 또는 정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즉시 그 이유를 통보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내에 추가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 경우 조사시한이 적절히 고려된다. 당국이 이러한 설명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러한 증거 또는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공표된 판정에서 밝혀져야 한다.
- 7. 당국이 조사개시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를 포함하여 2차적인 출처로부터의 정보를 기초로 정상가격에 관한 조사결과를 포함한 판정을 내려야하는 경우, 당국은 특별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당국은 가능하다면 공표된 가격표, 공식 수입통계 및 세관보고서 등과 같이 다른 독립된 출처로부터 취득한 정보 및 조사과정에서 다른 이해당사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점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관련정보가 당국에 입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상황이 그 당사자가 협조하였을 때보다 그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다.

1. 덤핑사실

가. 조사경과

- 조사실은 가격약속의 종료로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를 재심사하기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가격약속을 시행 중인 중국 산시타이강 및 리스크,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및 왈신 5개 재심사대상공급자에게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질의서를 발송함('24.5.20.)
 - 중국 산시타이강 및 리스크,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및 왈신 5개사는 조사참여신청서 제출 후 관계사 자료 취합, 주주총회, 연휴 등의 사유로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답변기한을 최초 '24.7.3.에서 '24.7.12.로 연장 승인하였음
 - 대만 유스코 및 왈신은 연장된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 중국 산시타이강은 바오스틸과의 합병에 따른 관계사 증가, 대리인 선임 등의 사유로 답변기한의 재연장을 요청하여 조사실은 답변 기한을 '24.7.12.에서 '24.7.26.로 재연장 승인하였음
 - 이후 다수의 관계사 자료 작성 및 취합 등의 사유로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조사실은 '24.7.26.에서 '24.8.2.로 추가 연장 승인하였고 이후 연장된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 중국 리스크는 관계사 답변자료 작성 애로 사유로 답변기한을 재연장 요청하여 조사실은 '24.7.12.에서 '24.7.15.로 재연장 승인하였고 이후 연장된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 인도네시아 인니청산은 다수 관계사 자료 작성, 세관 통관 감사 등의 사유로 답변기한의 재연장을 요청하여 조사실은 답변 기한을 '24.7.12.에서 '24.7.16.로 재연장 승인하고 이후 연장된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 조사실은 산시타이강 등 5개 재심사대상공급자에 대해 '24.12.1. ~ 12.11. 가격약속 이행에 대한 현지실사 및 온라인실사를 시행하였음

나. 덤핑사실 여부

1) 가격약속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급자

- 가격약속 시행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년 xxxxton에서 '23년 xxxxton으로 연평균 23.4% 감소하였음
- 또한, 톤당 판매가격은 '20년부터 '23년까지 연평균 13.5% 증가하여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 감소, 판매가격 상승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 및 판매가격 현황 >

(단위 : 톤, 천원/톤, %)

구 분	연 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			△37.4	△26.7	△2.2	△23.4
재심사대상물품 판매가격			22.1	44.9	△17.3	13.5

* 자료 : 관세청 통관자료, 재심사대상공급자 답변서

- 따라서, 조사실은 5개 재심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에 대해 재심사대상 기간('24.1.1~12.31) 동안 연간 수출물량제한과 최저가격 이상 판매가 적용된 가격약속을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제출된 답변자료를 사용한 덤핑사실 판단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함¹⁷⁾

17) xxxxxxxxxxxxxxxxxxxx

2) 그 밖의 공급자

-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원심조사 시 산정된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사용하여 국가별로 9.07%~29.68%를 적용하였음¹⁸⁾

< 원심의 그 밖의 공급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 >

공급국	공급자	최종덤핑률	산업피해율	최종부과수준
중국	그 밖의 공급자	24.83	25.82	24.83
인도네시아		29.68	25.82	25.82
대만		9.07	25.82	9.07

* 자료 :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의결서

2. 수입물량의 변동

-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년 xxxxton에서 원심의 덤핑방지조치가 시행된 '21년 xxxxton으로 감소하고 '22년 xxxxton으로 감소하여 '23년 까지 연평균 23.4% 감소하였음

<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 현황 >

(단위 : 톤, 천원/톤, %)

구 분	연 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			△37.4	△26.7	△2.2	△23.4			

* 자료 : 관세청 통관자료, 재심사대상공급자 답변서

- 중국 산시타이강 등 가격약속을 시행중인 공급자의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년 xxxxton에서 가격약속이 시행된 '21년에는 xxxxton으로 xx% 감소되었으며 '23년까지 연평균 xx% 감소하였음
- 아울러, 가격약속이 시행된 '21년부터의 수입물량은 5개사의 전체 가격약속 제한물량인 xxxxton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18) 원심조사 시 산정된 그밖의 공급자 덤핑률은 WTO반덤핑협정 9.1조, 관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근거하여 '최소부과원칙'이 적용되었음

< 가격약속을 시행중인 공급자의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 현황 >

(단위 : 톤, %)

구 분	연 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니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왈신					
합계						

* 자료 : 관세청 통관자료, 재심사대상공급자 답변서, 가격약속 현지실사 답변서

3.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 생산능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중국 산시타이강 및 리스코, 대만 유스코 및 왈신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년부터 '23년까지 생산능력은 연평균 xx%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xx% 감소하였음
- 다만, 생산능력 및 생산량의 감소는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가동률을 감안한 여유생산능력은 '22년 xxx천톤, '23년 xxx천톤으로 '23년 기준 국내소비물량 xxx천톤을 상회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 수출 여력을 추정시, 원심의 조치가 종료될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이 증가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가격약속을 시행중인 중국 및 대만 공급자의 생산 현황 >

(단위 : 천톤, %, %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생산량(b)						
가동률 (b/a)						
여유생산능력 (a-b)						

* 자료 : 재심사대상공급자 답변서

- 인도네시아의 인니청산의 경우 가격약속 시행 전인 '20년의 수출량이 xxxxton 인점을 감안 할시 원심 조치가 종료될 경우 가격약속으로 제한된 연간 수출물량 xxxxton 이상으로 한국에 수출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¹⁹⁾

4. 제3국 수입규제조치 현황

- 재심사대상물품은 미국, EU, 중국 등으로부터 총 25건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재심사대상국 중 중국은 16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11건, 대만은 12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음
- 이와 같이,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 평판압연 제품이 미국, EU와 같은 주요국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심의 조치인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을 종료한다면 재심사대상물품의 한국시장 수출 확대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재심사대상국의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제3국의 수입규제 현황 >

No	조치 국가	조치 유형	대상 제품	조치 개시일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1	미국	AD	STS Plate	' 99.05.21			7.39~10.20
2	미국	AD	STS Sheet/Strip	' 99.07.27			0.07~1.00
3	태국	AD	냉연	' 03.03.12			0.00~33.99
4	브라질	AD	냉연	' 13.10.04	U\$176~629/MT		U\$93~706/MT
5	태국	AD	냉연	' 13.12.09	8.50~33.32		
6	대만	AD	냉연	' 14.03.05	0.00~38.11		
7	EU	AD	냉연	' 15.08.27	24.40~24.60		0.00~6.80
8	미국	AD	열연/냉연	' 17.04.03	63.86~76.64		

¹⁹⁾ 인니청산의 경우 생산능력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생산능력 및 여유생산 능력 등을 분석할 수 없었음

공개용

9	미국	CVD	열연/냉연	' 17.04.03	75.60~190.71		
10	말련	AD	냉연	' 18.02.08	2.68~23.95		0.00~14.52
11	미국	232	철강 전제품	' 18.03.23	25	25	25
12	EU	S/G	철강 전제품	' 18.07.19	TRQ	TRQ	TRQ
13	중국	AD	슬라브/열연	' 19.07.22		20.20	
14	대만	AD	열연	' 19.10.09	26.68~32.58		
15	대만	CVD	열연	' 19.10.09	43.86		
16	대만	CVD	냉연	' 19.10.09	43.86		
17	멕시코	AD	냉연	' 20.10.01	U\$0.63/kg		U\$0.05~0.61/kg
18	EU	AD	열연	' 20.10.07	9.20~19.00	17.30	4.10~7.50
19	말련	AD	냉연	' 21.04.26		8.80	
20	EU	AD	냉연	' 21.11.18		10.20~20.20	
21	EU	CVD	냉연	' 22.03.16		0.00~21.40	
22	태국	AD	냉연	' 22.11.29		0.00~51.69	
23	브라질	CVD	냉연	' 22.12.02		18.79	
24	EU	우회 덤핑	열연	' 23.04.17	17.3 * 터키로부터 수입되는 STS 열연에 대해 인니産에 대한 AD조치 우회 판정		
25	EU	우회 덤핑/ 보조금	냉연	' 24.5.6	20.5 * 대만, 터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열연에 대해 인니産에 대한 AD조치 우회 판정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WTO 공식 홈페이지 및 조사당국 홈페이지

5.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검토 종합

- 조사실은 재심사대상공급자의 덤핑사실여부, 수입물량의 변동, 재심사대상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제3국 수입규제조치 현황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덤핑사실 여부) 중국 산시타이강 및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및 왈신 5개 재심사대상공급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가격약속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덤핑사실을 판단할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수입물량의 변동)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년 xxxxton에서 덤핑방지조치가 시행된 이후 '21년 xxxxton, '22년 xxxxton, '23년 xxxxton으로 지속 감소하여 덤핑방지조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23년 재심사대상공급국 중 중국 및 대만의 가동률은 xx%이며 여유 생산능력은 xxx천톤으로 수출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도네시아 인니청산의 경우에도 덤핑방지조치 시행전의 수출물량 감안시 수출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재심사대상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20년 대비 '21년 22.1%, '22년 44.9% 상승하는 등 '23년까지 연평균 13.5% 상승한 것은 최저가격 이상 판매 조건이 포함된 가격약속 시행 효과로 판단되며 수입물량 변동, 수출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원심 조치의 종료 시 덤핑가격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제3국 수입규제조치)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재심사대상물품이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25건의 수입규제조치로 판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원심의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량이 증가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 따라서, 조사실은 재심사대상공급자의 덤핑사실 여부,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 변동,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제3국의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Ⅲ.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 검토할 사항 >

-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되는지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함

관련 법규

-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확정 반덤핑관세는 부과일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가 덤핑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면 제2항에 의한 가장 최근의 검토일 또는 이 항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결된다. 다만, 당국이 동 일자 이전에 당국이 덤핑방지조치의 종료일자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일자 이전 합리적인 기간내에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심사대상물품의 누적적 평가 여부

< 검토할 사항 >

- 실질적인 피해 등의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서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인 경우에 그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누적하여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

관련 법규

-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
 -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판정함에 있어 2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이 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덤핑차액 및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덤핑물품이 상호 경쟁적이고 국내 동종물품과 경쟁적인 경우
- 관세법 시행규칙 제13조
 - 영 제61조제4항 및 영 제63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

준"이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영 제60조제2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1. 덤핑차액: 덤핑가격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2. 덤핑물품 수입량: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정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나. 동종물품의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3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는 공급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 국내수입량의 100분의 7을 초과하는 경우

○ WTO 반덤핑협정 제3.3조

2개국 이상으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동시에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a)각국으로부터 수입된 상품과 관련하여 확정된 덤핑마진이 제5조 제8항에 정의된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하며 각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고, (b)수입상품간의 경쟁조건 및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 상품간의 경쟁조건을 감안할 때 수입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하다고 조사당국이 결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당국은 이러한 수입품의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한-중 FTA협정 제7.13조

2개국 이상의 수입품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한쪽 당사국은 다른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간 경쟁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가. 판단기준

○ WTO 반덤핑협정과 관세법 시행령은 누적적 평가와 관련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종료재심에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음

○ 종료재심은 반덤핑조치 종료시에 국내산업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가능성을 보고 반덤핑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복수국산 재심사대상물품 수입의 효과 내지는 피해의 누적적 평가 여부도 반덤핑조치 종료시 재심사대상물품 상호간 및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 경쟁조건을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함. 다만, 현재의 경쟁조건도 고려할 것이나, 반덤핑조치 종료시 예상되는 미래의 경쟁조건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검토함

- * 반덤핑조치 종료 여부 검토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의 경쟁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판단(미국 관세법 제752(a)조)
- 한편, 종료재심에서의 누적적 평가는 원심과 달리 반덤핑조치로 인한 효과가 현재 국내시장에서의 재심사대상물품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1호 내지 반덤핑협정 제3.3조 (a),(b)항의 덤핑물품 미소물량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함
- * 즉, 원심에서는 수입물량 비중이 3% 이상인 경우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심에서는 3% 미만인 경우에도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나. 경쟁조건 검토

-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은 물리적 특성 및 용도, 제조공정, 유통 경로,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대부분의 요소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조사됨(원심과 동일)
- 국내수요자는 조사실의 국내수요자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이 상호대체 가능하여 동시에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 대비 가격 등이 고려요인이라고 답변함
- 따라서, 중국산, 인도네시아산 및 대만산 재심사대상물품은 동종물품과 경쟁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간 또는 재심사대상물품간 현재의 경쟁 관계가 향후 비경쟁관계로 변화할 것이라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글로벌 생산능력 증가 등으로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간 또는 재심사대상물품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미래에도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간 또는 재심사대상물품간 경쟁 관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조사실 의견

- 국내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시장에서 현재 재심사대상물품 상호간 및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간에 존재하는 경쟁조건 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의 경쟁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금번 1차 재심에서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재심사대상물품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 검토할 사항 >

- 원심 이후의 국내산업 관련 자료를 기초로 물량, 가격 등 지표 분석을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효과를 검토
- 물량에 미친 영향 : 덤핑방지조치 이후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 및 동종 물품의 판매량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감소하였는지 여부 검토
 - 가격에 미친 영향 : 덤핑방지조치 이후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의 가격 변동에 대하여 검토
 -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 생산량·가동률·매출·판매량·재고·시장점유율·가격·이윤·생산성·고용·임금·현금수지·투자·연구개발 등에 미친 영향 검토
 - 재심사대상물품 이외 지표에서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을 검토 : 재심사대상 물품 외의 수입물품의 물량·판매가격·기술개발·국내 수요 및 소비행태의 변화·국내산업의 수출·주요 원자재 가격 등

가. 물량에 미친 영향

-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년 xxx톤, '23년 xxx톤으로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3.4% 감소하였음
 - 기타국물품의 수입량은 '20년 xxx톤에서 '23년 xxx톤으로 재심사대 상기간 동안 연평균 38.1% 증가하였음
 -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년 xxx톤에서 '23년 xxx톤으로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0.8% 감소하였음
- 국내소비는 '20년 xxx톤에서 '23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6.0% 감소하였음
 - 재심사대상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3년에는 xxx%로 21.3%p 감소하였고, 기타국물품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12.8%p 증가하였음
 -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재심사 대 상기간 동안 8.4%p 증가하였음

<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 및 동종물품 판매량 현황 >

(단위 : 톤, %, %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a=b+e)		1,000	1,018	1.8	836	△17.9	830	△0.6	△6.0	
총수입(b=c+d)		1,000	670	△33.0	603	△10.1	697	15.5	△11.4	
물량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c)	1,000	626	△37.4	459	△26.7	449	△2.2	△23.4	
	기타국산 수입량(d)	1,000	1,016	1.6	1,727	70.0	2,632	52.4	38.1	
	동종물품 (내수) 판매량(e)	1,000	1,397	39.7	1,090	△21.9	977	△10.4	△0.8	
시장점유율	재심사대상물품 (c/a)			△17.8		△3.1		△0.4	△21.3	
	기타국산 물품 (d/a)			△0.0		6.3		6.5	12.8	
	동종물품 (e/a)			17.8		△3.3		△6.1	8.4	

* 자료 : 관세청 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나. 가격에 미친 영향

-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년 xxx천원, '23년 xxx천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5% 상승하였음
-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년 xxx천원, '23년 xxx천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2.2% 상승하였음
-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은 동종물품 판매가격보다 톤당 '20년 xxx천원, '21년 xxx천원, '22년 xxx천원, '23년 xxx천원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었음

< 재심사대상물품 및 동종물품 판매가격 현황 >

(단위 : 천원/톤,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대상물품 판매가격(a)		1,000	1,221	22.1	1,769	44.9	1,464	△17.3	13.5	
동종물품 판매가격(b)		1,000	1,207	20.7	1,615	33.8	1,413	△12.5	12.2	
가격차이(a-b)				음수확대		음수축소		음수확대		

* 자료 : 관세청 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주) 재심사대상물품 판매가격 = CIF가격 + 관세 + 통관제비용

다.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1) 생산량 및 가동률

-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능력은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간 xxx톤 수준을 유지하였음
-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량은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으로 증가했으나 '22년 xxx톤으로 감소하였고, '23년 xxx톤으로 다시 증가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7% 감소함
- 이에 따라 가동률은 '20년 xxx%에서, '21년 xxx%로 상승했으나, '22년 xxx%로 감소하였고, '23년 xxx%로 다시 증가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10.7%p 감소함

<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현황 >

(단위 : 톤, %, %p)

구분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20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생산능력(a)		<u>1,000</u>	<u>1,000</u> 0.0	<u>1,000</u> 0.0	<u>1,000</u> 0.0			0.0
생산량(b)		<u>1,000</u>	<u>1,100</u> 10.0	<u>754</u> △31.4	<u>864</u> 14.6			△4.7
가동률(b/a)			7.9	△27.3	8.7			△10.7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2) 판매 및 재고

- 동종물품의 총출하량은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으로 증가하였으나, '22년 xxx톤으로 감소 후, '23년 xxx톤으로 증가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6.1% 감소하였음
-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으로 증가하였으나, '22년 xxx톤, '23년 xxx톤으로 감소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0.8% 감소하였음
-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재심사대상기간 중 '20년 xxx톤에서 '23년 xxx톤으로 연평균 3.2% 증가하였고, 총출하 대비 재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1.4%p 증가함

< 판매 및 재고 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기초재고(a)	물량	<u>1,000</u>	<u>716</u>	△28.4	<u>704</u>	△1.7	<u>408</u>	△42.0	△25.8
생산량(b)	물량	<u>1,000</u>	<u>1,100</u>	10.0	<u>754</u>	△31.4	<u>864</u>	14.6	△4.7
총출하 (c=d+e+f)	물량	<u>1,000</u>	<u>1,083</u>	8.3	<u>759</u>	△29.9	<u>828</u>	9.1	△6.1
	금액	<u>1,000</u>	<u>1,365</u>	36.5	<u>1,296</u>	△5.1	<u>1,169</u>	△9.8	5.3
내수판매(d)	물량	<u>1,000</u>	<u>1,397</u>	39.7	<u>1,090</u>	△21.9	<u>977</u>	△10.4	△0.8
	금액	<u>1,000</u>	<u>1,685</u>	68.5	<u>1,761</u>	4.5	<u>1,380</u>	△21.6	11.3
수출(e)	물량	<u>1,000</u>	<u>845</u>	△15.5	<u>506</u>	△40.1	<u>712</u>	40.8	△10.7
	금액	<u>1,000</u>	<u>1,059</u>	5.9	<u>851</u>	△19.6	<u>967</u>	13.6	△1.1
타계정대체(f)	물량	<u>1,000</u>	<u>1,165</u>	16.5	<u>1,004</u>	△13.8	<u>1,079</u>	7.4	2.6
기말재고 (h=a+b-c)	물량	<u>1,000</u>	<u>983</u>	△1.7	<u>570</u>	△42.0	<u>1,098</u>	92.6	3.2
재고율(h/c)	%			△0.4		△0.7		2.4	1.4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3) 시장점유율

-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1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22년 xxx%, '23년 xxx%로 하락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8.4%p 상승하였음
- 재심사대상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21.3%p 하락하였고, 기타국產 수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12.8%p 상승함

< 시장점유율 현황 >

(단위 : %, %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변화율 ('20~'23)
			변화율	변화율	변화율	
재심사대상물품			△17.8	△3.1	△0.4	△21.3
기타국산 수입			△0.0	6.3	6.5	12.8
동종물품			17.8	△3.3	△6.1	8.4

* 자료 : 관세청 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4)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년 xxx천원에서 '21년 xxx천원, '22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였으나, '23년 xxx천원으로 하락하여 재심사대상 기간 중 연평균 12.2% 상승하였음
-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20년 xxx천원에서 '21년 xxx천원, '22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였으나, '23년 xxx원으로 하락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2.9% 상승하였음
-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xxx%에서 '21년 xxx%으로 하락하였으나, '22년 xxx% '23년 xxx%로 상승하였음

< 내수 판매가격 및 제조원가 >

(단위 : 천원/톤, 톤, %, %p)

구분	연도		증감률	연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20년	'21년		'22년	'23년			
동종물품판매가격(a)	1,000	1,207	20.7	1,615	33.8	1,413	△12.5	12.2
단위당 제조원가 (b=c+d+e)	1,000	1,194	17.3	1,713	39.1	1,421	△11.9	12.9
재료비(c)	1,000	1,348	19.4	1,655	43.5	1,763	△17.0	12.4
(제조원가대비재료비)			(1.4)	(2.6)		(△4.8)	(△0.9)	
노무비(d)	1,000	1,083	34.8	1,307	22.7	1,486	6.5	20.8
경비(e)	1,000	1,173	8.3	1,632	20.7	1,438	13.7	14.1
단위당 제조원가 비중 (판매가격 대비)			△2.3		3.2		0.6	1.5
재료비			△0.7		4.7		△3.6	0.4
노무비			0.1		△0.1		0.2	0.2
경비			△1.7		△1.5		4.0	0.9
재심사대상물품 판매가격	1,000	1,221	22.1	1,769	44.9	1,464	△17.3	13.5
동종물품 생산량	1,000	1,100	10.0	754	△31.4	864	14.6	△4.7

* 자료 : 관세청 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주) 단위당 제조원가 = 제조원가/생산량

주) 원가차이조정 : 국내산업은 '20년까지는 표준원가를 사용하고 실제원가와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직접 조정되어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산업은 '21년 이후 실제원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20년 원가차이 조정을 제조원가에 반영하여 비교함

5) 이윤

-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20년 xxx백만원에서 '21년 xxx백만원으로 증가, '22년 xxx백만원으로 감소되었고, '23년에는 △xxx백만원으로 적자 전환됨
-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년 xxx%에서 '21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22년 xxx%로 하락한 후, '23년 △xxx%로 적자 전환됨

< 내수부문 손익현황 >

(단위 : 백만원, %, %p)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매출액(a)	<u>1,000</u>	<u>1,685</u>	68.5	<u>1,761</u>	4.5	<u>1,380</u>	△21.6	11.3
매출원가(b)	<u>1,000</u>	<u>1,609</u>	60.9	<u>1,797</u>	11.7	<u>1,426</u>	△20.6	12.6
매출총이익(c=a-b)	<u>1,000</u>	<u>2,936</u>	193.6	<u>1,167</u>	△60.2	<u>619</u>	△47.0	△14.8
판매관리비(d)	<u>1,000</u>	<u>1,230</u>	23.0	<u>1,285</u>	4.5	<u>1,060</u>	△17.5	2.0
영업이익(e=c-d)	<u>1,000</u>	<u>5,574</u>	457.4	<u>985</u>	△82.3	<u>△63</u>	적자전환	적자전환
영업이익률(f=e/a)			5.2		△6.2		적자전환	적자전환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6) 고용 및 임금

- 국내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20년 xxx명에서 '23년 xxx명으로 증가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0.2% 증가하였음
- 1인당 평균임금은 '20년 xxx백만원에서 '23년 xxx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2% 상승하였음

< 고용 및 임금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연평균 고용 인원	생산직	1,000	981	△1.9	974	△0.8	990	1.7	△0.3
	사무직	1,000	960	△4.0	1,180	22.9	1,170	△0.8	5.4
	계	1,000	979	△2.1	992	1.3	1,006	1.4	0.2
연평균 1인당 임금	생산직	1,000	1,091	9.1	1,132	3.8	1,066	△5.9	2.1
	사무직	1,000	1,129	12.9	1,144	1.3	1,106	△3.3	3.4
	평균	1,000	1,095	9.5	1,132	3.4	1,068	△5.6	2.2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7) 생산성

- 재심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생산량, 1인당 부가가치는 모두 감소하였으나, 1인당 매출액은 증가하였음
- 1인당 동종물품 생산량은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 '22년 xxx톤, '23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9% 감소하였음
- 1인당 매출액은 '20년 xxx백만원에서 '21년 xxx백만원, '22년 xxx백만원, '23년 xxx백만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5.1% 증가하였음
- 1인당 부가가치는 '20년 xxx백만원에서 '21년 xxx백만원, '22년 xxx백만원, '23년 xxx백만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2.5% 감소하였음

< 생산성 관련 지표 >

(단위 : 명, 톤, 백만원, %)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고용인원(a)		1,000	979	△2.1	992	1.3	1,006	1.4	0.2
생산량(b)		1,000	1,100	10.0	754	△31.4	864	14.6	△4.7
총매출액(c)		1,000	1,365	36.5	1,296	△5.1	1,169	△9.8	5.3
총부가가치 ²⁰⁾ (d)		1,000	8,003	700.3	2,425	△69.7	309	△87.2	△32.4
1인당 생산량(b/a)		1,000	1,123	12.3	761	△32.3	859	12.9	△4.9
1인당 매출액(c/a)		1,000	1,394	39.4	1,306	△6.3	1,162	△11.1	5.1
1인당 부가가치(d/a)		1,000	8,171	717.1	2,445	△70.1	307	△87.4	△32.5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8)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 설비투자액은 '20년 xxx백만원에서 '23년 xxx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8% 감소하였음
- 설비투자액의 대부분은 기계장비 구입임
- 연구개발비는 '20년 xxx백만원에서 '23년 xxx백만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8.1% 감소하였음

<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지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설비투자	1,000	340	△66.0	430	26.4	890	106.7	△3.8
연구개발 ²¹⁾	1,000	5,324	432.4	4,469	△16.1	550	△87.7	△18.1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9) 자본조달능력

- '21년 영업이익이 회복되었으나, '22년 영업 이익 감소 후, '23년 적자 전환되어 내부 자본 조달 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본조달 능력 관련 지표 >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 영업이익 ²²⁾	△		흑자전환		△82.6	△적자전환	적자증가	
- 내수영업이익	1,000	5,574	457.4	985	△82.3	△63	적자전환	적자전환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20) 총부가가치 = 법인세차감전손익 + 인건비 + 순금융비용 + 임차료 + 조세공과 + 감가상각비

21) 무형자산화 된 연구개발비만 집계한 수치임

경상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연구개발비는 '20년 1,000 백만원, '21년 971백만원, '22년 836백만원, '23년 693백만원임

중국강철공업협회는 '22년 대비 '23년 요청인의 전사 연구개발비가 3.2% 감소하였으나 동종물품 연구개발비는 17.1%나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조원가로 계상된 전사 연구개발비가 3.2% 감소한 것으로 제조원가로 계상된 동종물품 연구개발비는 5.0% 감소하여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보임

22) 총 영업이익 = (내수판매 + 수출)의 영업이익

라.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영향

< 검토할 사항 >

- 덤핑방지조치 이후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영향을 검토함
 - 재심사대상물품 외의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무역제한적 관행 및 이들 간의 경쟁, 기술발전,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생산성의 검토 등

1)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수입물량 및 가격

-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재심사대상물품 이외 기타국산 수입물량은 '20년 1,000톤, '21년 1,016톤, '22년 1,727톤, '23년 2,632톤으로 연평균 38.1%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도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12.8%p 증가하였음
-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재심사대상물품 및 국내동종물품 판매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덤핑물품 이외의 수입 현황 >

(단위 : 톤, %, 천원/톤, %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 대상 물품	수입물량	<u>1,000</u>	<u>626</u>	△37.4	<u>459</u>	△26.7	<u>449</u>	△2.2	△23.4
	시장점유율			△17.8		△3.1		△0.4	△21.3
	판매가격	<u>1,000</u>	<u>1,221</u>	22.1	<u>1,769</u>	44.9	<u>1,464</u>	△17.3	13.5
기타국산 물품	수입물량	<u>1,000</u>	<u>1,016</u>	1.6	<u>1,727</u>	70.0	<u>2,632</u>	52.4	38.1
	시장점유율			△0.0		6.3		6.5	12.8
	판매가격	<u>1,000</u>	<u>971</u>	△2.9	<u>1,455</u>	49.9	<u>1,242</u>	△14.7	7.5
국내 동종 물품	판매물량	<u>1,000</u>	<u>1,397</u>	39.7	<u>1,090</u>	△21.9	<u>977</u>	△10.4	△0.8
	시장점유율			17.8		△3.3		△6.1	8.4
	판매가격	<u>1,000</u>	<u>1,207</u>	20.7	<u>1,615</u>	33.8	<u>1,413</u>	△12.5	12.2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2) 국내소비 변화

- 국내소비는 '20년 xxx톤에서 '23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6.0% 감소하였으나,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이 연평균 23.4% 감소하여,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년 xxx톤에서 '23년 xxx톤으로 연평균 0.8% 감소에 그침
- 덤핑방지조치의 영향으로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이 감소하여, 국내소비 감소가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됨

< 국내소비 현황 >

(단위 : 톤)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국내소비		<u>1,000</u>	<u>1,018</u>	1.8	<u>836</u>	△17.9	<u>830</u>	△0.6	△6.0
총수입		<u>1,000</u>	<u>670</u>	△33.0	<u>603</u>	△10.1	<u>697</u>	15.5	△11.4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		<u>1,000</u>	<u>626</u>	△37.4	<u>459</u>	△26.7	<u>449</u>	△2.2	△23.4
동종물품 내수판매량		<u>1,000</u>	<u>1,397</u>	39.7	<u>1,090</u>	△21.9	<u>977</u>	△10.4	△0.8

* 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3) 수출실적

- 국내산업의 수출량은 '20년 xxx톤에서 '23년 xxx톤으로 연평균 10.7% 감소하였고, 재심사대상기간 중 총출하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4.9%p 감소함
- 국내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0.8% 감소하였는데, 수출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내수판매물량 감소에 영향을 줄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수출 관련 매출 및 영업이익 등은 회계처리 시 별개로 산정되므로 수출로 인한 국내 동종물품의 내수 관련 매출 및 영업이익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국내산업의 수출동향 >

(단위 : 톤, %, %p)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총출하(a=b+c+d)	<u>1,000</u>	<u>1,083</u>	8.3	<u>759</u>	△29.9	<u>828</u>	9.1	△6.1
내수판매(b)	<u>1,000</u>	<u>1,397</u>	39.7	<u>1,090</u>	△21.9	<u>977</u>	△10.4	△0.8
수출(c)	<u>1,000</u>	<u>845</u>	△15.5	<u>506</u>	△40.1	<u>712</u>	40.8	△10.7
타계정대체(d)	<u>1,000</u>	<u>1,165</u>	16.5	<u>1,004</u>	△13.8	<u>1,079</u>	7.4	2.6
수출비중(e=c/a)			△22.0		△14.6		29.1	△4.9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 국내산업의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영업이익 비교 >

(단위 : 백만원, %, %p)

구분 \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수출 부문	영업이익	△		흑자전환		△83.1	△	적자전환	적자증대
	영업이익률	△		흑자전환		△4.2	△	적자전환	△1.1
내수 부문	영업이익	<u>1,000</u>	<u>5,574</u>	457.4	<u>985</u>	△82.3	<u>△63</u>	적자전환	적자전환
	영업이익률			5.2		△6.2	△	적자전환	△2.4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4) 주요 원자재의 가격

-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xxx%에서 xxx% 수준이고, 주요 원재료는 니켈, 크롬, 스크랩임
 - 니켈의 톤당 가격은 '20년 xxx천원에서 '21년 xxx천원, '22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였으나, '23년에는 xxx천원으로 하락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0.8% 상승하였음
 - 크롬의 톤당 가격은 '20년 xxx천원에서 '21년 xxx천원, '22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였으나, '23년에는 xxx천원으로 하락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2.7% 상승하였음
 - 스크랩의 톤당 가격은 '20년 xxx천원에서 '21년 xxx천원, '22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였으나, '23년에는 xxx천원으로 하락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0.8% 상승하였음
- 재심사대상기간 중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과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21년에는 덤핑방지조치의 효과로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단위당 제조원가 상승률보다 높았고, '22년과 '23년에는 동종물품 판매가격은 단위당 제조원가 상승률보다 낮았는데 이는 기타국산 수입물량 증가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 주요 원재료 가격 >

(단위 : 천원/톤, %)

구분	연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20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니켈		<u>1,000</u>	<u>1,176</u> 17.6	<u>1,730</u> 47.1	<u>1,361</u> △21.3	10.8		
크롬		<u>1,000</u>	<u>1,183</u> 18.3	<u>1,723</u> 45.6	<u>1,432</u> △16.9	12.7		
스크랩		<u>1,000</u>	<u>1,315</u> 31.5	<u>1,770</u> 34.6	<u>1,359</u> △23.2	10.8		
동종물품 판매가격		<u>1,000</u>	<u>1,207</u> 20.7	<u>1,615</u> 33.8	<u>1,413</u> △12.5	12.2		
덤핑물품 판매가격		<u>1,000</u>	<u>1,221</u> 22.1	<u>1,769</u> 44.9	<u>1,464</u> △17.3	13.5		
단위당 제조원가(a)		<u>1,000</u>	<u>1,173</u> 17.3	<u>1,632</u> 39.1	<u>1,438</u> △11.9	12.9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관세청 수입통관자료

마.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피해에 미친 영향 종합

- 덤핑방지조치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은 덤핑방지조치 이전 대비 크게 감소하여 덤핑방지조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됨
 - *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 : '20년 xxx톤, '23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3.4% 감소하였음
 - 반면, 덤핑방지조치를 받고 있지 않은 기타국 물품의 수입량은 증가하였음
 - * 기타국물품의 수입량은 '20년 xxx톤에서 '23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38.1% 증가하였음
-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20년 xxx톤에서 '21년 xxx톤으로 증가하였으나, '22년 xxx톤, '23년 xxx톤으로 감소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0.8% 감소하였음
 - 시장점유율은 '20년 xxx%에서 '21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22년 xxx%, '23년 xxx%로 하락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8.4%p 상승하였음
 - 영업이익률은 '20년 xxx%에서 '21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22년 xxx%로 하락한 후, '23년 △xxx%로 적자 전환됨
- 덤핑방지조치 이후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여, 동종물품 내수판매량과 시장점유율, 영업이익률 등 국내산업 피해지표가 회복되었으나, 기타국물품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3.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피해의 전망

< 검토할 사항 >

-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지속될 것인지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함

관련 법 규

-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확정 반덤핑관세는 부과일(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가 덤핑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면 제2항에 의한 가장 최근의 검토일 또는 이 항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이내에 종결된다. 다만, 당국이 동 일자 이전에 당국이 덤핑방지조치의 종료일자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일자 이전 합리적인 기간내에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 답변서를 제출한 중국 및 대만의 재심사대상공급자의 재심사대상물품 생산능력은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0.2% 감소하였고, 생산량은 연평균 1.0% 감소하였음
 - 이에 따라 중국 및 대만의 재심사대상공급자 가동률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0.8%p 하락하였고, '23년 기준 여유생산능력은 중국 및 대만의 재심사대상공급자만 고려하더라도 xxx천톤으로 '23년 국내소비물량(xxx천톤)을 초과함
- 인도네시아의 재심사대상공급자인 인니청산 및 그 관계사 답변서에 따르면 인니청산은 스테인리스강 슬라브를 생산하고, 광칭과 루이푸가 재심사대상물품을 생산하고 있음
 - 제출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생산능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²³⁾ 광칭 및 루이푸의 가동률이 100%를 훨씬 초과(최대 xxx%)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²⁴⁾, 제출된 생산능력 및 가동률을 신뢰하기 어려움

- SMR²⁵⁾자료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 슬라브의 인도네시아 생산능력이 '20년 xxx천톤에서 '23년 xxx천톤으로 연평균 29.4% 증가하고, 가동률은 '20년 xxx%에서 '23년 xxx%로 21.3%p 하락한 점을 고려할 때 재심사대상물품 생산여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23년 기준 여유생산능력은 중국 및 대만의 재심사대상공급자만 고려하더라도 xxx천톤으로 '23년 국내소비물량(xxx천톤)을 초과하고, 중국의 재심사대상공급자가 중국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는 점*, 인도네시아도 생산여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對한국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 '21년 중국 전체의 스테인리스강 슬라브 생산능력이 xxx천톤인데 비해 중국 재심사대상공급자(산시타이강, 리스코)의 재심사대상물품 생산능력은 xxx천톤에 불과함

23) 생산능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인니청산 측은 생산능력에 대한 증빙은 없고, 제출한 생산능력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설정한 수치라고 답변함('24.11.22. 이메일)

24) 인니청산 측은 Cold Rolled Full Hard 제품은 일반제품에 비해 1/4시간이 소요되므로 해당제품 생산량에 1/4을 적용하는 경우 루이푸의 가동률은 '20년 xxx%, '21년 xxx%, '22년 xxx%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답하였으나('24.11.8. 이메일), 이를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100%를 훨씬 초과(최대 xxx%)하는 해가 여전히 발생함

25) SMR(Steel & Metals Market Research)는 '94년 설립되어 현재 오스트리아에 소재하고 있으며, 철강 및 금속산업에 대한 글로벌 전문 시장조사 리서치 기관으로 국내외 관련 업계에서 주요 리서치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음

< 제심사대상공급자의 생산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 현황 >

(단위 : 천톤, %, %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크)	생산능력(a)			0.0	0.0	0.0	0.0
	생산량(b)			7.0	△8.6	△2.2	△1.5
	가동률 (b/a)			7.0	△8.6	△2.2	△1.5
대만 (유스코, 탕잉, 왈신)	생산능력(a)			△0.2	1.1	△4.2	△1.1
	생산량(b)			40.4	△22.0	△5.7	1.1
	가동률 (b/a)			40.6	△22.8	△1.6	2.2
중국, 대만 합계	생산능력(a)			△0.0	0.2	△0.9	△0.2
	생산량(b)			12.4	△11.3	△2.8	△1.0
	가동률 (b/a)			12.4	△11.5	△1.9	△0.8
	여유생산능력 (a-b)			△47.2	93.2	6.1	2.7
인니 청산	광칭	생산능력(a)		0.0	0.0	50.0	14.5
		생산량(b)		△1.5	69.3	53.9	36.9
		가동률 (b/a)		△1.5	69.3	2.6	19.6
	루이푸	생산능력(a)		0.0	0.0	0.0	0.0
		생산량(b)		50.8	29.8	△64.2	△11.2
		가동률 (b/a)		50.8	29.8	△64.2	△11.2

* 자료: 공급자 답변서

<스테인리스강 슬라브 생산능력, 생산량>

(단위 : 천톤, %, %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중국	생산능력(a)			6.4	9.8	19.9	11.9
	생산량(b)			5.5	△4.4	6.6	2.5
	가동률 (b/a)			△0.6	△9.6	△7.1	△17.3
인도 네시아	생산능력(a)			38.3	32.5	18.2	29.4
	생산량(b)			34.8	32.3	△12.2	16.1
	가동률 (b/a)			△2.0	△0.2	△19.2	△21.3
대만	생산능력(a)			0.0	0.0	0.0	0.0
	생산량(b)			19.2	△22.0	△21.9	△10.1
	가동률 (b/a)			7.5	△10.2	△8.0	△10.7
제심사 대상국 합계	생산능력(a)			8.5	11.6	19.2	13.0
	생산량(b)			7.9	△1.2	3.8	3.4
	가동률 (b/a)			△0.4	△8.5	△8.4	△17.2

* 자료: SMR의 스테인리스강 슬라브 생산능력, 생산량 자료

나.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가격비교 및 전망

- '23년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은 덤핑방지관세를 포함할 경우, '20년 동종물품의 xxx%에서 '21년 xxx%, '22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23년 xxx%로 하락하였으며,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저가 판매되고 있음
- '23년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은 덤핑방지관세를 제외할 경우, '20년 동종물품의 xxx%에서 '21년 xxx%, '22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23년 xxx%로 하락함
- 가격약속 시행으로 덤핑방지관세 포함 여부에 따른 재심사대상물품 판매가격 차이는 크지 않으나, 덤핑방지조치 시행이후 동종물품 가격 대비 재심사대상물품 가격비율이 상승하였다가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의 가격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임

<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 판매가격 비교 >

(단위 : 천원/톤, %, %p)

구분		연도	'20년	'21년		'22년		'23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재심사 대상물품 판매가격	덤핑관세 포함(a)		<u>1,000</u>	<u>1,221</u>	22.1	<u>1,769</u>	44.9	<u>1,464</u>	△17.3	13.5
	덤핑관세 미포함(b)		<u>1,000</u>	<u>1,220</u>	22.0	<u>1,757</u>	44.1	<u>1,457</u>	△17.1	13.4
동종물품 판매가격(d)			<u>1,000</u>	<u>1,207</u>	20.7	<u>1,615</u>	33.8	<u>1,413</u>	△12.5	12.2
가격차이	a-d	△		△	음수확대	△	음수감소	△	음수확대	
	b-d	△		△	음수확대	△	음수감소	△	음수확대	
가격비율	a/d				1.0		7.2		△5.2	3.1
	b/d				0.9		6.7		△5.0	2.7

* 자료 : 관세청 통관자료, 국내산업 답변서

주) 재심사대상물품 판매가격 = CIF가격 + 관세 + 통관제비용

다.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 (중국강철공업협회 주장) 원심 신청 시 조치 중이던 국가 중 베트남과 인도는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조치를 종료함. 따라서, 덤핑방지 조치를 종료시 중국 등 재심사대상물품의 한국향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요청인 주장) 미국은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규제를 25년째 지속하고 있고, EU는 '19년 이후 5건의 조치를 추가하여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베트남의 전체 시장규모는 '23년 기준 48만톤이고, 인도의 수입규모는 100만톤 정도로 재심사대상국의 잉여생산능력을 해소하기 어려움
- (조사실 검토) 우리나라의 원심 조치 이후, 베트남과 인도가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종료하였으나,
 - 인도네시아산 냉연제품에 대해 EU는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를, 태국은 덤핑방지관세를, 브라질은 상계관세를 신규로 부과하여
 - 미국, EU,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이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해 총 25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의 하나의 증거가 됨

< 재심사대상국의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제3국의 수입규제 현황 >

	조치 국가	조치 유형	대상 제품	조치 개시일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1	미국	AD	STS Plate	' 99.05.21			7.39~10.20
2	미국	AD	STS Sheet/Strip	' 99.07.27			0.07~1.00
3	태국	AD	냉연	' 03.03.12			0.00~33.99
4	브라질	AD	냉연	' 13.10.04	U\$176~629/MT		U\$93~706/MT
5	태국	AD	냉연	' 13.12.09	8.50~33.32		
6	대만	AD	냉연	' 14.03.05	0.00~38.11		

공개용

7	EU	AD	냉연	' 15.08.27	24.40~24.60		0.00~6.80
8	미국	AD	열연/냉연	' 17.04.03	63.86~76.64		
9	미국	CVD	열연/냉연	' 17.04.03	75.60~190.71		
10	말련	AD	냉연	' 18.02.08	2.68~23.95		0.00~14.52
11	미국	232	철강 전제품	' 18.03.23	25	25	25
12	EU	S/G	철강 전제품	' 18.07.19	TRQ	TRQ	TRQ
13	중국	AD	슬라브/열연	' 19.07.22		20.20	
14	대만	AD	열연	' 19.10.09	26.68~32.58		
15	대만	CVD	열연	' 19.10.09	43.86		
16	대만	CVD	냉연	' 19.10.09	43.86		
17	멕시코	AD	냉연	' 20.10.01	U\$0.63/kg		U\$0.05~0.61/kg
18	EU	AD	열연	' 20.10.07	9.20~19.00	17.30	4.10~7.50
19	말련	AD	냉연	' 21.04.26		8.80	
20	EU	AD	냉연	' 21.11.18		10.20~20.20	
21	EU	CVD	냉연	' 22.03.16		0.00~21.40	
22	태국	AD	냉연	' 22.11.29		0.00~51.69	
23	브라질	CVD	냉연	' 22.12.02		18.79	
24	EU	우회 덤핑	열연	' 23.04.17	17.3 * 터키로부터 수입되는 STS 열연에 대해 인니産에 대한 AD조치 우회 판정		
25	EU	우회 덤핑/ 보조금	냉연	' 24.5.6	덤핑률 19.3, 상계관세율 20.5 * 대만, 터키,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열연에 대해 인니産에 대한 AD조치 우회 판정		

* 자료 : 국내산업 답변서, WTO 공식 홈페이지 및 조사당국 홈페이지

4.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가. 중국내 생산능력 및 수요 예측

- (중국강철공업협회 주장) '20년 기준 EU, 한국, 일본 등의 1인당 스테인리스강 소비량은 32kg이지만, 중국은 18kg에 불과하고, 세계 스테인리스강 조강 생산량은 철강 생산량의 3.9%를 차지하는 반면 중국은 2.9%에 불과함²⁶⁾. 따라서, 향후 중국의 스테인리스강 내수소비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함

* 중국 1인당 스테인리스강 소비량(단위: kg): '20년 18.7, '21년 19.8, '22년 19.9, '23년 22.0kg²⁷⁾

- 중국 국무원이 '22년 12월 발표한 「내수 확대 전략 계획 개요(2022-2035년)」에 따르면 내수 소비 확대를 위해 투자를 지속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스테인리스강 소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함
- 중국 국무원은 '24년 3월 「대규모 장비 갱신 및 소비재 교환 촉진 행동 계획」을 실시하여, '27년 공업, 농업, 건설, 교통 등 분야의 설비투자 규모를 '23년 대비 25% 이상 증가시킬 계획임. 따라서, 스테인리스강 소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함
-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24년 8월 「철강 생산능력 교체 중단에 관한 산업정보기술부 통지」를 통해 신규 제철소 건설을 금지함
- (요청인 주장) 수요증가는 향후 수년간 그 경향이 지속되어야 하고, 구조조정은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어야 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장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함
- 중국 국무원이 '22년 12월 발표한 「내수 확대 전략 계획 개요(2022-2035년)」는 '35년까지의 전략으로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보고된 바 없고, 증빙으로 제출되지 않았으며, 관련 효과는 '30년 이후에나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26) 중국재부망(China Fortune Network) '21.7.10.보도

27) 자료 : Annual Report of World Stainless Association

- 중국 국무원의 '24년 3월 「대규모 장비 갱신 및 소비재 교환 촉진 행동 계획」은 '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27년 이후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
- 중국 산업정보기술부의 '24년 8월 「철강 생산능력 교체 중단에 관한 산업정보기술부 통지」를 통해 신규 제철소 건설을 금지하였으나, 그 효과는 3~5년후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조사실 검토) 향후, 중국강철공업협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1인당 스테인리스강 소비량 증가, 중국정부의 내수확대 계획, 대규모 장비 갱신 계획, 신규제철소 건설 금지 정책으로 과잉 생산능력이 해소되고, 이후 재심사를 통해 여유생산능력 등 객관적 지표가 검토되어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되더라도 덤핑 및 산업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환급

- (수입·수요자 주장) (주)디엠에스코리아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가 환급되지 않아 중국, 대만 등에서 한국을 거치지 않고 제3국으로 직접 수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환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조사실 검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시행규칙 제14조²⁸) 관련)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는 환급이 제한되며, 이는 국산 원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것임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환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28)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제한하는 물품과 그 제한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서 생산하여 수입된 수출용원재료를 제외한다.

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검토 종합

- 조사실은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피해에 미친 영향,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가격비교 및 전망,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을 바탕으로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을 검토하였음
 - (덤핑방지조치의 효과) 덤핑방지조치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재심사대상 물품의 수입량은 연평균 23.4% 감소하고 시장점유율은 21.3%p 하락한 반면, 동종물품 판매량은 소폭 감소(연평균 0.8%)하고 시장점유율은 8.4%p 상승함
 -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23년 기준 공급국의 여유생산능력은 중국 및 대만의 재심사대상공급자만 고려하더라도 xxx천톤으로 '23년 국내소비물량(xxx천톤)을 초과하고, 중국의 재심사대상공급자가 중국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는 점, 인도네시아도 생산여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對한국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가격비교 및 전망) 덤핑방지조치 시행이후 동종물품 가격 대비 재심사대상물품 가격비율이 상승하였다가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의 가격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하락 내지 상승 억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제3국 수입규제조치) 미국, EU,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이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해 총 25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대한국 수출 확대 가능성의 하나의 증거가 됨
-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피해에 미친 영향,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가격비교 및 전망,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IV. 가격약속 제의 내용 및 검토

< 검토할 사항 >

- 가격약속 제의 내용
- 가격약속 제의시기 적정성 여부 및 약속의 실효성 여부
-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등

관련 법규

- 관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 관세법 제54조
 -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출의 중지 등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른 약속이 수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잠정조치 또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중지 또는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출자가 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
- 관세법 제56조제1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와 제54조에 따른 약속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약속 내용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관세법시행령 제68조 - 준용규정
 - ①수출자가 약속을 제의하거나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하는 때는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45일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한 약속의 내용이 즉시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약속일부터 6월 이내에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인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만, 동 약속의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약속을 수출자를 지정하여 제의할 수 있다.
-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자가 수락된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덤핑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조치의 적용기간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를 계속하여 덤핑방지관세율 등 부과내용을 정한 경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 ⑥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계속한 결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당해 약속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없거나 덤핑차액이 없는 원인이 약속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속을 계속 이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출자가 그 약속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의하여 잠정조치를 실시하는 등 덤핑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관세법시행령 제70조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덤핑방지조치의 종료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⑩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약속의 실효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수출자에게 약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출자가 약속의 수정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덤핑방지관세율을 산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WTO 반덤핑협정 제8조

- ③수입국 당국은 가격약속의 수락이 예를 들어 실제적 또는 잠재적 수출자

의 수가 너무 많거나 일반정책상의 이유를 포함하는 다른 이유로 현실성이 없다고 간주하는 경우, 제시된 가격약속을 수락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하다면 당국의 수출자에게 가격약속의 수락이 부적절하다고 간주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출자에게 이에 대한 의견제시의 기회를 부여한다.

- ⑤수입회원국 당국은 가격약속을 제안할 수 있으나 어떠한 수출자도 동 약속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 ⑥수입국 당국은 가격약속을 수락한 모든 수출자에게 이러한 약속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인 정보의 제공 및 관련자료에 대한 검증의 허용을 요구할 수 있다. 약속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입국 당국은 이용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신속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확정관세는 이러한 잠정조치의 적용이전 90일 이내에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해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

○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및 제11.5조

- 당국이 덤핑방지조치의 종료일자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일자 이전 합리적인 기간내에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덤핑방지조치의 종료가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8조에 따라 수락된 가격약속에도 준용된다.

1. 가격약속 제의 내용

가. 가격약속 제의 재심사대상공급자

- 재심사 시 가격약속을 제의한 재심사대상공급자는 중국 산시타이강 및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및 왈신 5개사로 원심의 가격약속 대상자와 동일함

나. 가격약속 제의 내용

- (산시타이강) '24.12.27. 최초 제의 하였으며 최저가격 산정과 관련된 사항은 원심과 동일하며 연간 수출제한물량은 원심의 xxxxton에서 xxxxton으로 상향하여 가격약속 제의서를 제출함
 - 산시타이강에서 제의한 상향된 연간 수출제한물량에 대한 근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실과 실무협의 후 '25.1.9. 원심의 연간 수출제한물량과 동일한 xxxxton으로 수정 제의함
 - 이후, '25.1.10. 최저가격 산정과 연간 수출제한물량은 원심과 동일하고 약속의 이행여부에 관한 검증 허용, 대상물품 및 부과대상 제외 물품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또는 증빙자료 구비, 분기별 최저가격 적용 기준일은 수입신고일로 하는 등의 약속 조건을 추가하여 최종 제의서를 제출함
- (리스코) '24.12.31. 원심과 동일한 최저가격 및 연간 수출물량 등의 조건으로 가격약속 유지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가격약속 제안에 대한 공문을 제출함
 - 이후, '25.1.15. 최저가격 산정과 연간 수출제한물량은 원심과 동일하고 약속의 이행여부에 관한 검증 허용, 대상물품 및 부과대상 제외 물품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또는 증빙자료 구비, 분기별 최저가격 적용 기준일은 수입신고일로 하는 등의 약속 조건을 추가하여 최종 제의서를 제출함

- (인니청산) '24.12.24. 원심과 동일한 최저가격 및 연간 수출물량 등의 조건으로 가격약속 유지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가격약속 제안에 대한 공문을 제출함
 - 이후, '25.1.15. 최저가격 산정과 연간 수출제한물량은 원심과 동일하고 약속의 이행여부에 관한 검증 허용, 대상물품 및 부과대상 제외 물품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또는 증빙자료 구비, 분기별 최저가격 적용 기준일은 수입신고일로 하는 등의 약속 조건을 추가하여 최종 제의서를 제출함

- (유스코) '24.12.24. 원심과 동일한 최저가격 및 연간 수출물량 등의 조건으로 가격약속 유지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가격약속 제안에 대한 공문을 제출함
 - 다만, 상기 공문을 통해 지분관계는 있으나 구조적 또는 상업적으로 밀접하지 않다는 사유로 관계사 xxxx을 재심사 가격약속 수출자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함
 - 이에 대해, 조사실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²⁹⁾에 따라 유스코가 xxxx의 지분을 xx% 이상 소유³⁰⁾하고 있어 관계사임이 분명하다는 의견을 표명함('25.1.3., 이메일)
 - '25.1.8. 원심과 동일한 최저가격 및 연간 수출물량 상한 등의 조건으로 가격약속 유지를 희망한다는 수정된 제의 공문을 제출함
 - 이후, '25.1.15. 최저가격 산정과 연간 수출제한물량은 원심과 동일하고 약속의 이행여부에 관한 검증 허용, 대상물품 및 부과대상 제외 물품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또는 증빙자료 구비, 분기별 최저가격 적용 기준일은 수입신고일로 하는 등의 약속 조건을 추가하여 최종 제의서를 제출함

29) 제23조제1항제4호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

30) 다만 유스코는 재심사 가격약속 제의 관련 '25.1.3. 추가의견서를 통해 유스코는 xx의 주식 약 xx%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

- (왈신) '24.12.31. 원심과 동일한 최저가격 및 연간 수출물량 등의 조건으로 가격약속 유지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가격약속 제안에 대한 공문을 제출함
- 이후, '25.1.15. 최저가격 산정과 연간 수출제한물량은 원심과 동일하고 약속의 이행여부에 관한 검증 허용, 대상물품 및 부과대상 제외 물품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또는 증빙자료 구비, 분기별 최저가격 적용 기준일은 수입신고일로 하는 등의 약속 조건을 추가하여 최종 제의서를 제출함

2. 가격약속 제의에 대한 국내생산자 의견

- 신청자 포스코는 종료재심사 요청서('24.3.13)를 통해 가격약속을 포함한 원심의 덤핑방지조치를 5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4.11.13. 조사실과의 이해관계인 회의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조건의 가격약속 연장에 대해 요청함
- '25.2.4. 이해관계인 회의에서도 5개 재심사대상공급자의 원심과 동일한 조건의 가격약속 제의에 대해 “이견없음”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장 발언을 통해 재차 원심과 동일한 조건의 가격약속 연장을 요청함

3. 가격약속 제의에 대한 검토

가. 제의 시기의 적정성 여부

- 재심사대상공급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준용규정)에 따라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 45일 전에 서면으로 가격약속 제의에 대한 공문을 제출하여 제의 시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나. 가격약속의 실효성 상실 또는 우려 여부

(1) 가격약속 준수 여부

- 조사실은 원심의 가격약속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4.12.1.~11. 가격약속 현지실사 및 온라인실사를 실시함

- 실사에서는 판매자료 관리시스템, 최저가격 산정 내역, 연간 수출제한 물량 준수 여부, 최저가격 적용시점 등을 점검함
- (산시타이강) '24.12.2. 산시타이강 및 관계사에 대한 현지실사를 산시타이강 상해 법인을 방문하여 실시함
- 산시타이강은 실사 전 현지실사 답변서를 통해 '22년 수출물량 중 9건의 보고 누락사항을 자체 발견하고 자료를 제출함
- 보고누락 물량은 '22.2분기 1건 xx톤, '22.3분기 3건 xx톤, '22.4분기 5건 xxx톤으로 총 xx톤이며 연간 수출제한물량 xxxx톤의 xx%인것을 확인함
- 이에 대해 산시타이강은 가격약속 이행 초기단계였고 바오스틸과 합병('21년) 후 회계시스템 통합·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설명함
- 또한, 금번 현지실사 대응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수출물량을 전수 점검하여 오류를 발견하였고 '23년과 '24년에는 오류가 없음을 확인했고 향후 가격약속 이행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현지실사시 표명함
- 실사전에 접수한 현지실사 답변서를 통해 연간 수출제한물량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함
- 최저가격 산정 내역에 대해 '22.3분기, 냉연, 폭 2mm, 두께 1500mm 제품을 샘플로 확인한 결과 최저가격 산정은 이상 없음을 확인함
- 분기별 최저가격 적용 기준시점을 확인한 결과 산시타이강은 현지 선적일 기준으로 최저가격 적용 및 한국정부에 보고한다고 답변하였으나 '22.12.29.에 선적된 상업송장 xxxxxxxx 물품은 수입신고일 기준인 '23.1분기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신고 기준일자에 일부 혼동이 있었던 것을 확인함

- 수출물량, 최저가격 준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실사 전 제시한 송장 5개 샘플과 현지실사에서 랜덤으로 제시한 송장 4개 샘플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함

< 사전제시 및 랜덤 송장샘플 확인 결과 >

	송장번호	수출물량	최저가격	기타 확인사항
사전제시		일치확인	이상없음	FOB → CIF 환산방법 추가 확인(이상없음)
		일치확인	이상없음	'22.12.31. 선적 → '23.1 분기 최저가격 적용, 최저가격 이상없음 확인
		일치확인	이상없음	-
		일치확인	이상없음	-
		일치확인	이상없음	-
랜덤샘플		일치확인	이상없음	-
		일치확인	이상없음	선적일 '23.9.29 일이나 '23.4 분기 실적으로 보고 (신고기준일자 혼선 발견)
		일치확인	이상없음	-
		일치확인	이상없음	-

* 자료 : 현지실사 답변서, 현지실사 결과 보고

- 최저가격 신고 기준인 CIF가격 관련 FOB가격이 적용된 수출건에 대한 CIF가격 환산에 대해 검증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함
- (리스크) '24.12.11. 리스크에 대한 온라인실사를 대리인인 리인타회계법인을 방문하여 실시함
- 실사전 접수한 현지실사 답변서를 통해 연간 수출제한물량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함
- 최저가격 산정 내역에 대해 '22.3분기, 냉연, 폭 2mm, 두께 1500mm 제품을 샘플로 확인한 결과 최저가격 산정은 이상 없음을 확인함
- 분기별 최저가격 적용 기준시점을 확인한 결과 리스크는 국내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가격 적용 및 한국정부에 보고한다고 답변함

- 수출물량, 최저가격 준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실사 전 제시한 송장 4개 샘플과 현지실사에서 랜덤으로 제시한 송장 6개 샘플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함
- 최저가격 신고 기준인 CIF가격 관련 FOB가격이 적용된 수출건에 대한 CIF가격 환산에 대해 검증한 결과 환산방법이 각각 상이하였으나 최저가격 이상으로 수출한 것을 확인함
- * 리스크는 자체적으로 FOB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높은 경우, 동일가격으로 CIF 환산하거나 FOB가격에 xxxx\$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고 최저가격보다 낮은 경우는 xxxx\$ 가산(점점은 FOB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낮은 경우 실시)

< 리스크의 CIF 가격 환산 내역 확인 결과 >

송장번호	환산방법	리스크 설명	확인결과
	FOB+xx\$	FOB가격이 최저가격보다 높아 통상적 수준의 운임비 등 가산 (FOB xx\$, 최저가격 xx\$)	FOB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높음
	FOB+xx\$	수입자가 해상운임 등을 포함하여 CIF xx\$로 수입신고한 가격 적용 (FOB xx\$, 최저가격 xx\$)	수입신고필증 확인 결과, 리스크 설명과 일치 (수입자 CIF 신고)
	FOB+xx\$	수입자가 해상운임 등을 포함하여 CIF xx\$로 수입신고한 가격 적용 (FOB xx\$, 최저가격 xx\$)	수입신고필증 확인 결과, 리스크 설명과 일치 (수입자 CIF 신고)
	FOB+xx\$	FOB가격에 수입신고필증 상 운임, 보험료를 가산하여 CIF가격으로 환산하여 xx\$ 적용 (FOB xx\$, 최저가격 xx\$)	리스크 CIF환산가격 xx, 실제 CIF환산가격 xx모두 최저가격 이상 확인
(운임 xxxx원 + 보험료 xxxx원) / 필증상 환율 1315.34원/\$ =xxxx\$ xxxx\$ / 전체 수량 xxxx톤 = xx\$/톤 ⇒ CIF 환산은 FOB xx\$+xx\$=xx\$가 되어야 하나, 리스크는 한국수입업체에서 대략 xx\$ 가산하면 된다고하여 xx\$ 가산했다는 설명 ³¹⁾			
	FOB+xx\$	xxxx 사례와 동일하게 환산 확인	리스크 CIF환산가격, 실제 CIF환산가격 모두 최저가격 이상 확인

* 자료 : 현지실사 답변서, 현지실사 결과 보고

- (인니청산) '24.12.3. 인니청산에 대한 현지실사를 청산그룹 상해오피스를 방문하여 실시함

31) 조사실은 실사 시 CIF가격 환산은 통일성 있게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고 리스크는 향후 CIF환산 시 수입신고필증 자료 등에 따라 최대한 정확히 환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 인도네시아 이동거리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고 인니청산의 한국판매자료가 청산그룹 상해오피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함
- 실사전 접수한 현지실사 답변서를 통해 연간 수출제한물량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함
- 최저가격 산정 내역에 대해 '22.3분기, 냉연, 폭 2mm, 두께 1500mm 제품을 샘플로 확인한 결과 최저가격 산정은 이상 없음을 확인함
- 분기별 최저가격 적용 기준시점을 확인한 결과 인니청산은 국내 수입 신고일 기준으로 최저가격 적용 및 정부에 보고 한다고 답변함
- 수출물량, 최저가격 준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실사 전 제시한 송장 5개 샘플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함
- 다만, 랜덤샘플 xxxxxxxx('23.11월) 등에 대해 시스템 관리 현황, 상업송장 등 증빙자료를 현지실사 시 제시하지 못함
- 이에 대해, 인니청산은 한국 수출물량에 대해 가격약속 대상물품에 대해서만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고 인니청산의 회계시스템은 회계입력일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송장번호, 선적일 등으로 조회가 어렵다고 설명함
- 조사실은 가격약속의 검증을 위해서는 상업송장, 선적일 등의 기준으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대상 및 비대상물품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현지 실사시 제시함
- 이에 대해 인니청산은 현지실사 후 의견서를 통해 현지실사 시 제시한 랜덤샘플 xxxxxxxx에 대한 상업송장, 수입신고필증 등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가격약속 대상 및 비대상물품에 대해 품목별 판매현황을 관리하고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힘
- (유스코) '24.12.6. 유스코에 대한 현지실사를 대만 가오슝 법인을 방문하여 실시함

- 실사전 접수한 현지실사 답변서를 통해 연간 수출제한물량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함
- 다만, 실사 전 현지실사 답변서를 통해 '23.1분기, '24.2분기 집계 오류에 대한 수정자료를 제출하였고 수출제한물량은 준수한 것을 확인함

< 유스코의 수출물량 집계 오류 현황 >

관련송장	보고시기	수정전 물량	수정후 물량	합계	비고
	'23.1월			xx톤 (전후 동일)	동일분기 내 물량 수정
	'23.2월				
	'24.4월			xx톤 (전후 동일)	동일분기 내 물량 수정
	'24.5월				

* 자료 : 현지실사 답변서, 현지실사 결과 보고

- 또한, 실사시 사전검토에서 발견한 수입신고번호 xxxxxx('22.1월), 모아스틸 수입물량 xx톤에 대해 확인 요청한 결과 유스코 관계사인 와이씨엘의 담당자가 실수로 보고 누락했음을 인정함
- 최저가격 산정 내역에 대해 '22.3분기, 냉연, 폭 2mm, 두께 1500mm 제품을 샘플로 확인한 결과 최저가격 산정은 이상 없음을 확인함
- 분기별 최저가격 적용 기준시점을 확인한 결과 리스크는 국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최저가격 적용 및 정부에 보고한다고 답변함
- 수출물량, 최저가격 준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실사 전 제시한 송장 5개 샘플과 현지실사에서 랜덤으로 제시한 송장 7개 샘플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함
- (왈신) '24.12.5. 왈신에 대한 현지실사를 대만 타이난법인을 방문하여 실시함
- 가격약속 보고서와 실사 전 현지실사 답변서를 통해 '23년도 xx톤을 초과하여 한국에 수출한 것을 확인함

- 왈신은 실무담당자가 송장번호 xxxxxxxx 내역 중 "316L, 6mm*1555mm xx톤, 316L, 3mm*1555mm xx톤"을 비대상 물품으로 착각하여 산정 누락했다고 설명함
- * xxxxxxxxxxxx
- 다만, 3mm*1555mm xx톤은 가격약속 대상이 아닌것을 확인, 실제 초과물량은 xxxx톤(약속물량의 xx%)임을 확인함
- 왈신은 동 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에러 보완 등을 위해 한국 수출 전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 중임을 밝혔으며 실사 시 한국전용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
- 최저가격 산정 내역에 대해 '22.3분기, 냉연, 폭 2mm, 두께 1500mm 제품을 샘플로 확인한 결과 최저가격 산정은 이상 없음을 확인함
- 분기별 최저가격 적용 기준시점을 확인한 결과 왈신은 국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최저가격 적용 및 정부에 보고 한다고 답변함
- 수출물량, 최저가격 준수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실사 전 제시한 송장 4개 샘플과 현지실사에서 랜덤으로 제시한 송장 7개 샘플에 대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함
- 다만, 샘플자료 확인 시 일부 거래건 xxxxxxxx(선적일 '22.7.4., 수입신고일 '22.7.11.) 등에서 수입신고일 3분기이나 2분기 거래건으로 정부 보고하는 등 일부 자료관리 오류가 있음을 확인함

다. 가격약속 제의 종합 검토

- 조사실은 신청인이 가격약속을 포함한 원심의 덤핑방지조치 연장을 요청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고 산시타이강 등 5개 재심사대상공급자 모두 원심과 동일한 조건의 가격약속 연장 의사를 공문과 제의서를 통해 제출함

- 조사실은 산시타이강, 유스코, 왈신 3개사는 수출물량 보고 누락, 연간 수출제한물량 초과 등 가격약속 위반 소지가 있으나 실사전 자체 신고하고 연간 수출제한물량의 1% 미만으로 소량인 점,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또한, 대상물품만을 엑셀로 관리하여 현지실사 시 원활히 대응하지 못한 인니청산은 실사 후 의견서를 통해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대상 및 비대상물품에 대한 관리방안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한편, 조사실은 현지실사에서 확인한 가격약속 관련 이행 강화를 위해 약속의 이행여부에 관한 검증 허용, 대상물품 및 부과대상 제외 물품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또는 증빙자료 구비, 분기별 최저가격 적용 기준일은 수입신고일로 하는 등의 약속 조건을 추가하여 가격약속 제의서를 보완하였음
- 따라서, 조사실은 원심과 동일한 최저가격 산정 및 연간 수출제한물량 등 제의 내용, 약속 이행 강화를 위한 제의서 보완 등을 고려하여 재심사 가격약속 제의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4.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가. 재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 '25.2.4., 최종 판정 주요사항에 대한 온라인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한 결과 5개 재심사대상공급자 중 산시타이강, 인니청산은 회의 참석하였으나 사전 발언요지는 제출하지 않았고 2개 공급자 동일하게 현장 발언을 통해 원심과 동일한 가격약속이 유지되기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
- 리스코, 유스코, 왈신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 발언요지나 의견서 제출은 없었음

나. 가격약속 관련 냉·열연 쿼터분리에 대한 의견 검토

- 재심사 기간 중 xxxx 등 일부 기업은 가격약속의 수출물량에 대해 냉·열연 쿼터를 분리해 줄것을 요청함
 - * xxxx 등 냉·열연 쿼터 분리 희망 기업은 국내 냉연 제조사로 열연의 수입비중을 높여 쿼터를 분리해 달라는 입장
- 이에 대해 조사실은 다음과 같이 검토함
 - 가격약속 중인 스테인리스스틸 평판압연 제품은 시장원리에 의해 약 xxxx의 비율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3년도 가격약속 STS평판압연 냉·열연 수입 추이(톤) >

국가	수출자	전체	냉연	열연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니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왈신			
합계				

* 자료 : 재심사대상공급자 답변서

- 조사실은 임의로 쿼터를 분리·조정하여 냉연의 수입비중이 높게 될 경우 국내 냉연 제조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열연의 수입비중이 높을 경우 냉연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한편, 원심 조사·판정 당시 조사대상물품이었던 스테인리스스틸 평판압연을 냉·열연으로 분리할 근거 및 기준이 없으며, 쿼터를 임의 배분할 경우 국내 수요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바, 재심사 가격약속시 냉·열연의 쿼터 분리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V. 가격약속 및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1. 가격약속 및 최종덤핑률

가. 가격약속

- 조사실은 “II.1.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21년 원심의 가격약속이 시행된 이후 '20년부터 '23년까지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연평균 23.4% 감소하고 판매가격은 연평균 13.5% 상승하는 등의 가격약속으로 인한 덤핑방지 효과를 확인하였음
- 또한, 가격약속 실사('24.12.1~12.11)를 통해 연간 수출제한물량, 최저가격 준수 등이 전반적으로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함
- 다만, 일부 수출자의 경미한 약속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 받고 재심사 가격약속 제의서에서 가격약속 검증 강화, 가격약속 대상물품 및 부과대상 제외 물품에 대한 기록·관리 강화, 분기별 최저가격 적용 기준일을 수입신고일로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가격약속 준수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였음
- 아울러, 이해관계인 회의 등을 통해 원심과 동일한 조건의 가격약속 유지에 대한 재심사 신청인의 동의 의견을 확인함
- 따라서, 재심사에서 가격약속을 제의한 중국 산시타이강 및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및 왈신 5개 재심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현행 가격약속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나. 최종덤핑률

- 앞서 “II.1.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가격약속을 유지하기로 한 중국 산시타이강 및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및 왈신에 대해서는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음

-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II.1.나.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조사 시 산정된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9.07%~29.68%를 적용함

< 재심사대상공급자별 가격약속 및 최종덤핑률 >

공급국	공급자	재심사 최종덤핑률
중국	산시타이강 및 그 관계사	가격약속 시행
	리스코	가격약속 시행
	그 밖의 공급자	24.83%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및 그 관계사	가격약속 시행
	그 밖의 공급자	29.68%
대만	유스코 및 그 관계사	가격약속 시행
	왈신	가격약속 시행
	그 밖의 공급자	9.07%

2.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

- 본 조사건은 1차 재심으로, 덤핑방지조치로 인해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감소하여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조치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덤핑방지조치 종료시에는 재심사대상물품에 의한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 증가와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은 원심의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인 25.82%를 적용³²⁾하는 것이 타당함

32)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무역위원회고시 제2022-2호) 제21조(산업피해 구제수준의 산정) 제4항제2호 :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심 또는 직전 재심에서 산정된 산업피해 구제수준을 적용함. 이에 따라 원심의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25.82%)을 적용함. 한편, 현대비앤지스틸(주)는 열연제품과 냉연제품에 대해 별도의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하나의 조사대상물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산업피해구제수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3. 가격약속 및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 덤핑방지관세율은 WTO규정 제9.1조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①항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규정에 따라 덤핑률과 산업 피해구제 수준 중 낮은 것을 적용함³³⁾
- 따라서,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공급자별로 9.07% ~ 25.82%로 산정함

< 최종 덤핑률 수준과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의 비교 >

공급국	공급자	최종 덤핑률	산업 피해율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
중국	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산시타이강”) 및 그 관계사 - Tianjin Taigang & TPCO Stainless Steel Co., Ltd. (“톈진타이강”) - 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Precision Strip Co. Ltd. (“산시정밀”)	(가격약속)	25.82%	(가격약속)
	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리스코”)	(가격약속)		(가격약속)
	그 밖의 공급자	24.83%		24.83%
인도네시아	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인니청산”) 및 그 관계사 - 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광칭”) - 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루이푸”)	(가격약속)		(가격약속)
	그 밖의 공급자	29.68%		25.82%
대만	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유스코”) 및 그 관계사 - Yieh Mau Corp. (“이예마우”) - Tang Eng Iron Works Co., Ltd. (이하 “탕양”)	(가격약속)		9.07%
	Walsin Lihwa Corporation (“왈신”)	(가격약속)	(가격약속)	
	그 밖의 공급자	9.07%	9.07%	

33) 1. WTO반덤핑 규정 제9.1조 :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 (중략). 관세는 덤핑 마진 미만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세법 시행령 제65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 : ① 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는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 <개정 2024. 2. 29.>

VI. 무역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

<비공개>

<비공개>

참고 1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1차 재심 산업피해 조사경과

- '24.03.13. : 요청인,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요청
- '24.05.17. : 재심사개시 공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117호)
- '24.05.20. : 국내 이해관계인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7.1.)
- '24.05.29. : (주)세진튜브텍, 부과제외 의견서 제출
- '24.06.28. : 에이취알메탈(주), 수입자 답변서 제출
(주)티플렉스, 수입자·수요자 답변서 제출
- '24.07.05. : (주)코리아실팩, 부과제외 의견서 제출
- '24.07.01. : (주)황금에스티, 포레시아코리아(주) 수입자 답변서 제출
- '24.07.05.~15. : 요청인, 현대비앤지스틸(주), 한국철강협회, (주)황금에스티, (주)유에스티, (주)디엠에스코리아, (주)굿스틸 공청회 발언요지 제출
- '24.07.10. : 요청인, 국내생산자 답변서 제출
- '24.07.24. : 공청회(1차) 개최
- '24.07.31. : 요청인, 공청회 후 의견서 제출
- '24.08.02. : 현대비앤지스틸(주), 공청회 후 의견서 제출
- '24.09.25.~26. : 국내생산자 실사
- '24.11.04. : (주)유봉, 부과제외 의견서 제출
- '24.11.14. : (주)세진튜브텍, 부과제외 의견서 제출
- '24.11.14. : 요청인, 의견서 제출(세진튜브텍, 코리아실팩, 유봉 의견서 관련)

- '24.11.22.~29. : 요청인, 한국철강협회, 에스엠스틸(주), 현대비앤지스틸(주), 중국강철공업협회, (주)코리아실팩, (주)디엠에스 코리아 공청회 발언요지 제출
- '24.12.19. : 공청회(2차) 개최
- '24.12.26. : 중국강철공업협회, 공청회 후 의견서 제출
- '24.12.31. : 요청인, 공청회 후 의견서 제출
- '25.01.02. : (주)세진튜브텍, 부과제외 의견서 제출
- '25.01.10. : 요청인, 의견서 제출
- '25.01.15. : 중간보고서 수정본 공개(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없었음)
- '25.02.19. : 최종판정

참고 2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1차 재심 덤핑조사 및 가격약속 제의 경과

- '24.03.13. : 요청인, 덤핑방지관세 종료재심사 요청
- '24.05.17. : 재심사개시 공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117호)
- '24.05.20. : 재심사대상공급자 대상 질의서 송부(답변기한 : '24.7.3.)
- '24.07.03. : 중국 산시타이강 및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및 왈신 등 재심사대상공급자 전원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답변기한 : '24.07.12.)
- '24.07.12. : 산시타이강 '24.07.26., 리스코 답변기한 '24.07.15., 인니청산 '24.07.16.으로 답변기한 재연장
- '24.07.14. : 유스코, 왈신 답변서 제출
- '24.07.15. : 리스코 답변서 제출
- '24.07.16. : 인니청산 답변서 제출
- '24.07.26. : 산시타이강 답변기한 '24.08.02.로 추가 연장
- '24.08.02. : 산시타이강 답변서 제출
- '24.11.21. : 중국 산시타이강 및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및 왈신 등 재심사대상공급자 대상 가격약속 현지실사 계획 통보
- '24.12.01.~12.11. : 현지실사 및 온라인실사 실시(재심사대상 5개사)
- '24.12.12. : 현지실사 및 온라인실사 결과 통보(재심사대상 5개사)
- '24.12.24. : 인니청산, 유스코 현지실사 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인니청산, 유스코 가격약속 제의서 제출

- '24.12.27. : 산시타이강 가격약속 제의서 제출
- '24.12.31. : 리스코, 왈신 가격약속 제의서 제출
- '25.01.08. : 유스코 가격약속 수정 제의서 제출
- '25.01.09. : 산시타이강 가격약속 수정 제의서 제출
- '25.01.10. : 산시타이강 가격약속 최종제의서 제출
- '25.01.15. : 리스코, 인니청산, 유스코, 왈신 가격약속 최종제의서 제출
- '25.1.24.~2.3. : 최종덤핑률 및 가격약속 관련 사항 이해관계인 송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25.02.04. : 이해관계인 회의 개최

무역조사실

무역조사실장 정석진

조사단

[국내산업피해조사]

조사단장	산업피해조사과장	류동희
조사관	산업피해조사과	나강운

[덤핑사실조사]

조사단장	덤핑조사과장	김민정
조사관	덤핑조사과	이배화

공개용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1차) 최종판정 의결서
(조사번호 : 구제 23-2024-4호)

2025. 2. 20.

무 역 위 원 회

무 역 위 원 회 의 결

의 안 번 호 의결 제2025-3호

조 사 번 호 구제 23-2024-4

조 사 건 명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1차)

요 청 인 주식회사 포스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

대표자 이시우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변호사 정영진, 김성중, 회계사 조노석)

피 요 청 인 <중국>

1.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1)

2.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3. 그 밖의 공급자

<인도네시아>

1.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및 그 관계사

2. 그 밖의 공급자

<대만>

1.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2.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

3. 그 밖의 공급자

재심사대상물품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HS 코드 :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90, 7220.90.9000

의 결 일 2025. 2. 20.

상기 안건에 대하여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및 관세법 제56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위원회는 기획재정부령 제865호(2021.9.15. 시행)에 의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시행 중인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시행을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2. 이에 따라, 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하여 공급자별로 다음과 같은 율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연장하고, 중국 산시타이강,

1) 각 피요청인의 주소는 “[별지] 피요청인의 주소”에 기재된 바와 같다.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왈신에서 제외한 원심 수준의 가격약속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약속 이행기간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 동안 유효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한다.

<중국>

- 그 밖의 공급자 : 24.83%

<인도네시아>

- 그 밖의 공급자 : 25.82%

<대만>

- 그 밖의 공급자 : 9.07%

다만, 기획재정부령 제865호(2021.9.15.)에 의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인 물품중에서 ①ASTM 규격 S31803, S32050, S32205, S32750 강종과 ②두께 0.2mm의 특정²⁾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양면에 0.05mm의 NBR³⁾이 코팅된 제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유

무역조사실(이하 “조사실”)은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요청인”)가 2024.3.13.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청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1차)(재심사개시: 2024.5.17.)에 대해 요청인, 공급자, 수입자 등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질의서에 의한 서면조사, 현지실사 및 관계

2) 전체 중량에서 탄소(C) 0.15%이하, 크롬(Cr) 16~18%, 망간(Mn) 2% 이하, 질소(N) 0.1% 이하, 니켈(Ni) 6~8%, 인(P) 0.045% 이하, 황(S) 0.03% 이하, 규소(Si) 1% 이하인 것

3) 니트릴 부타디엔 고무(Nitrile Butadiene Rubber)

기관에 대한 자료 확인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사를 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1차) 최종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로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4)와 관세법 제56조제1항5)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6)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정한다.

I. 배경

요청인은 2024.3.13.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가격약속 연장을 위한 종료재심사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

-
- 4)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확정 반덤핑관세는 부과일(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가 덤핑과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였다면 제2항에 의한 가장 최근의 검토일 또는 이 항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된다. 다만, 당국이 동 일자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 일자이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근거에 입각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는 덤핑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것으로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후략)
 - 5)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이 조에서 “덤핑방지조치”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변경,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2. 제54조에 따른 약속
 - 6) 관세법 시행령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덤핑방지조치의 종료로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였고, 위원회는 2024.4.2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본 건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2024.5.17. 관보에 게재하였다.

그 동안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해서는 위원회 원심 판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2021.9.15.부터 2024.9.14.까지 7.17% ~ 25.8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이 시행되었으며, 원심에 따른 조치의 효력은 관세법 제56조제3항7)에 따라 재심사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국내생산자는 주식회사 포스코, 현대비엔지스틸 주식회사 등 12개사이다. 조사실은 국내생산자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⁸⁾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⁹⁾에 따라 원심 조사대상공급자였던 중국의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도네시아의 인니청산, 대만의 유스코, 왈신 등을 재심사대상공급자(이하 “피요청인”)로 선정하여 2024.5.20.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
- 7) 관세법 제56조(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등) ③ 덤핑방지요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요치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제1항에 따라 덤핑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심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 덤핑방지요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더라도 재심사기간 동안 그 덤핑방지요치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8)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 반덤핑 조사에 사용되는 질의서를 받는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에게 응답을 위해 최소한 30일이 주어진다. 동 30일 기간의 연장을 위한 어떤 요청에 대하여도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이러한 연장은 가능한 한 허용되어야 한다.
- 9)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국내생산자·공급자·수입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급자에게 덤핑사실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때에는 회신을 위하여 질의서발송일부 40일 이상의 회신기간을 주어야 하며 공급자가 사유를 제시하여 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6.2조¹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¹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24.07.24.과 2024.12.19. 2차례에 걸쳐 요청인 등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조사실은 WTO 반덤핑협정 제6.9조¹²⁾와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¹³⁾에 따라 최종 판정을 하기 전에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 공개본(수정본)을 2025.01.15. 이해관계인들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조사실은 2025.1.24. 최종 덤핑률 및 가격약속 관련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의견제출 기회(2025.1.24.~2.3.)를 제공하였고,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2025.2.4.)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
- 10) WTO 반덤핑협정 제6.2조 : 반덤핑 조사의 전과정을 통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는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당국은 요청에 따라 모든 이해당사자가 상반된 이해를 갖는 당사자와 회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반박 주장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기회의 제공시 비밀보호의 필요 및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당사자도 이러한 회합에 참석할 의무는 없으며, 회합 불참이 그당사자를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이해당사자는 또한 정당한 경우 구두로 다른 정보를 제시하는 권리를 갖는다.
- 11)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⑧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진술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공청회 등이 있는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 12) WTO 반덤핑협정 제6.9조 : 당국은 최종판정 이전에 확정조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공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 13)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공고 등) ④무역위원회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 및 제70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전에 해당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II.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및 국내산업의 범위

1. 재심사대상물품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과 제3항¹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보에 게재된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17호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2024.5.17.)상의 “재심사대상물품”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865호¹⁵⁾(2021.9.15. 시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을 말한다.

조사보고서¹⁶⁾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범위는 스테인리스강¹⁷⁾ 평판압연¹⁸⁾

-
- 14) 관세법 시행령 제70조(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약속(이하 이 조에서 “약속”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의 필요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정일부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사 개시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재심사 요청자,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 15)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65호, 2021.9.15. 시행) 참조.
- 16) 조사보고서 p.4.
- 17) 스테인리스강이란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이하이고 크롬(chromium)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5 이상인 합금강을 말함(그 밖의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음)
- 18) 평판압연제품이란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의 압연제품으로서 그 모양이 다음과 같음
- 연속적 적층 모양인 코일이거나
- 직선형인 경우에는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열 배 이상인 것이나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이며, 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적어도 두께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함
따라서, 열간압연제품과 냉간압연제품을 모두 포함하며, 열처리, 산세처리, 도금·페인팅 등 표면 처리, 트리밍 여부에 관계없이 재심사대상물품에 포함됨.

제품¹⁹⁾이다. 이에 해당하는 관세품목분류번호는 HSK 7219.12.1090, 7219.12.9000, 7219.13.1090, 7219.13.9000, 7219.14.1090, 7219.14.9000, 7219.22.1090, 7219.22.9000, 7219.23.1090, 7219.23.9000, 7219.24.1090, 7219.24.9000, 7219.31.1090, 7219.31.9000, 7219.32.1090, 7219.32.9000, 7219.33.1090, 7219.33.9000, 7219.34.1090, 7219.34.9000, 7219.35.1090, 7219.35.9000, 7219.90.1090, 7219.90.9000, 7220.11.1090, 7220.11.9000, 7220.12.1090, 7220.12.9000, 7220.20.1090, 7220.20.9000, 7220.90.1090, 7220.90.9000 이다.

재심사대상물품의 주요 물리적 특성은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강도, 내산화성이다.

재심사대상물품은 자동차, 조선, 항공, 건축내외장재, 주방용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국내 수입상이 재심사대상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국내 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국내 동종물품

WTO 반덤핑협정 제2.6조²⁰⁾와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²¹⁾에 따르면, “동종 물품”이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19) 조사보고서 p.4의 두께가 8mm를 초과하는 제품 등은 재심사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WTO 반덤핑협정 제2.6조 : 이 협정 전체를 통해 "동종상품"이라는 용어는 동일한 상품 즉, 고려중에 있는 상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을 의미하며, 그러한 상품이 없는 경우 비록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으나 고려중에 있는 상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상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1)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①영 제59조제4항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과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의 평가 등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겉모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그러한 물품이 없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과 매우 유사한 기능·특성 및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조사보고서²²⁾에 의하면 국내생산품은 재심사대상물품과 비교하여 물리적 특성, 용도 및 구성요소, 제조공정, 품질 및 유통경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국내생산품이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

3.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요청 및 검토

조사보고서²³⁾에 따르면, (주)세진튜브텍은 ASTM 규격 S31803, S32205, S32750 강종의 경우 소량 수요제품으로 요청인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상기 강종의 소량 수요에 대해 요청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재심 요청인이 부과제외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주)유봉은 ASTM 규격 S32050 강종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불가하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S32050 강종은 재심 요청인이 생산하고 있지 않고, 원심 조사대상물품에서 제외된 S31524, N08367 강종과 유사한 강종이며, 재심 요청인이 부과제외에 동의한 점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22) 조사보고서 pp.7~8.

23) 조사보고서 pp.9~10.

(주)코리아셀팩은 두께²⁴⁾ 0.2mm의 특정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양면에 0.05mm의 NBR이 코팅된 제품이 국내에서 공급되고 있지 않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상기 물품은 재심사 요청인이 생산하고 있지 않고, 재심 요청인이 부과제외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①ASTM 규격 S31803, S32050, S32205, S32750 강종과 ②두께 0.2mm의 특정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의 양면에 0.05mm의 NBR이 코팅된 제품은 재심사 요청인이 생산하고 있지 않거나 공급이 어려운 점, 재심 요청인이 부과제외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결정한다.

4. 국내산업의 범위

가. 국내산업의 범위 검토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²⁵⁾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²⁶⁾에 따르면

-
- 24) 전체 중량에서 탄소(C) 0.15%이하, 크롬(Cr) 16~18%, 망간(Mn) 2% 이하, 질소(N) 0.1% 이하, 니켈(Ni) 6~8%, 인(P) 0.045% 이하, 황(S) 0.03% 이하, 규소(Si) 1% 이하인 것
- 25) 관세법 시행령 제59조(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 ④법 제51조를 적용함에 있어서의 국내산업은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생산사업과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 의한 생산사업을 제외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한다.
- 26) ② 영 제59조제4항에서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자인 생산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영 제59조제6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6개월 이전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
 2. 덤핑물품의 수입량이 근소한 생산자
- ③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생산자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와 동일 또는 유사한 가격 및 조건 등

“국내산업”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물품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 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생산사업”으로 하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덤핑물품을 수입한 생산자와 당해 수입물품의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에 의한 국내생산사업은 제외될 수 있다.

조사보고서²⁷⁾에 의하면, 조사실이 해당 산업의 주무부서(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에 확인한 결과,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는 재심사 요청인을 포함한 12개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 조사건의 요청인인 주식회사 포스코는 국내생산자 중 유일하게 답변서 공개본과 비공개본을 모두 제출하였고, 국내총생산량의 80%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내에 재심사대상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고, 재심사 대상물품 공급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국내산업”은 관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포스코의 국내 동종물품 생산사업의 합”으로 결정한다.

으로 이를 판매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생산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27) 조사보고서 pp.13~14.

II.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수입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위원회는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보고서에 기초하여 원심의 덤핑방지조치 이후 덤핑사실 여부, 수입물량의 변동, 재심사대상 공급국 및 공급자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제3국 수입규제조치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1. 덤핑사실

가. 조사경과

조사보고서²⁸⁾에 의하면, 조사실은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WTO 반덤핑협정 제6.1.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피요청인들에게 40일 이상의 답변기간을 정하여 2024.5.20.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조사실은 질의서 발송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통보하였다.

피요청인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니청산, 유스코, 왈신 5개사는 조사참여신청서 제출 후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조사실은 당초 2024.7.3.인 답변기한을 2024.7.12.로 연장 승인하였다.

유스코, 왈신은 연장된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8) 조사보고서 p.25.

산시타이강은 답변기한을 재연장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답변기한을 2024.7.12.에서 2024.7.26.로 재연장 승인하였다. 이후 산시타이강은 추가 연장을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답변기한을 2024.7.26.에서 2024.8.2.로 추가 연장 승인하였다. 이후 산시타이강은 추가 연장된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리스크는 답변기한을 재연장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답변기한을 2024.7.12.에서 2024.7.15.로 재연장 승인하였다. 이후 리스크는 연장된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인니청산은 답변기한을 재연장 요청하였고 조사실은 답변기한을 2024.7.12.에서 2024.7.16.로 재연장 승인하였다. 이후 인니청산은 연장된 기한내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산시타이강 등 5개 재심사대상공급자에 대해 2024.12.1.~12.11. 가격약속 이행에 대한 현지실사 및 온라인실사를 시행하였다.

나. 덤핑사실 여부

위원회는 조사실의 덤핑사실 조사가 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1) 가격약속으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급자

조사보고서²⁹⁾에 의하면, 원심의 가격약속 시행으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재심사대상물품은 2020년 xxx톤에서 2023년 xxx톤으로 연평균 23.4% 감소하였다. 또한, 톤당 판매가격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3.5% 증가하였다.

조사실은 원심의 가격약속으로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 감소, 판매가격 상승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에서 검토³⁰⁾한 바와 같이 5개 재심사대상공급자의 덤핑률에 대해 연간 수출물량 제한과 최저가격 이상 판매가 적용된 가격약속을 시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제출된 답변자료를 사용한 덤핑사실 판단은 실익이 없다고 결정한다.³¹⁾

2) 그 밖의 공급자

위원회는 조사실에서 검토³²⁾한 바와 같이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원심 조사 시 산정된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을 사용하여 중국 24.83%, 인도네시아 29.68%, 대만 9.07%를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29) 조사보고서 p.26.

30) 조사보고서 p.26.

31) xxxxxxxxxxxx

32) 조사보고서 p.27.

2. 수입물량의 변동

조사보고서³³⁾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20년 xxx톤에서 원심의 덤핑 방지조치가 시행된 2021년 xxx톤으로 감소하고 2022년 xxx톤으로 감소하여 2023년까지 연평균 23.4% 감소하였다.

가격약속을 시행 중인 5개 재심사대상공급자의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2020년 xxx톤에서 가격약속이 시행된 2021년에는 xxx톤으로 xxx% 감소하였고 2022년에는 xxx톤으로 xxx% 증가하였다가 2023년 xxx톤으로 xxx% 감소하는 등 2023년까지 연평균 xxx% 감소하였다.

아울러, 조사실은 가격약속이 시행된 2021년부터의 수입물량이 5개사 전체의 가격약속 제한 물량인 xxx톤 내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조사보고서³⁴⁾에 의하면, 산시타이강, 리스코, 유스코, 왈신의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생산능력은 연평균 xxx% 감소하고 생산량은 xxx% 감소하였다.

한편, 산시타이강, 리스코, 유스코, 왈신의 가동률을 감안한 여유생산능력은 2022년 xxx천톤, 2023년 xxx천톤으로 2023년 기준 국내소비물량 xxx천톤을 상회하였다.

33) 조사보고서 p.27

34) 조사보고서 p.28

이에 따라, 조사실은 추가적 수출 여력을 추정할 시 원심의 조치가 종료될 경우 재심사대상물품의 한국으로의 수출이 증가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조사실은 인니청산의 경우에도 가격약속 시행 전인 2020년의 수출량이 xxx톤 인점을 감안할 시 원심의 조치가 종료될 경우 가격약속으로 제한된 연간 수출물량 xxx톤 이상으로 한국에 수출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제3국 수입규제조치 현황

조사보고서³⁵⁾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은 미국, EU 등의 국가로부터 총 25건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의 수입규제조치가 시행 중이다.

조사실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이 주요국에서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심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을 종료한다면 재심사대상물품의 한국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5.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검토 종합

조사실은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이 2020년 xxx톤에서 2023년 xxx톤으로 지속 감소하여 원심의 덤핑방지조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5) 조사보고서 p.29

중국 및 대만의 여유 생산능력을 감안할 시 추가 수출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도네시아 인니청산의 경우에도 덤핑방지조치 시행 전의 수출물량을 감안할 시 추가 수출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재심사대상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13.5% 상승한 것은 가격약속 시행 효과로 판단하였다.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해 미국, EU 등의 국가에서 25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하여 판로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원심의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한국으로의 수출이 증가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물량의 변동,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 여력,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심의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될 경우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한다.

Ⅲ.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1. 재심사대상물품의 누적적 평가 여부

조사보고서³⁶⁾에 의하면 조사실은 국내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 시장에서 현재 재심사대상물품 상호간 및 재심사대상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에 존재하는 경쟁조건 뿐만 아니라, 향후 미래의 경쟁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금번 1차 재심에서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재심사대상물품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가. 물량에 미친 영향

조사보고서³⁷⁾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물량은 2020년 xxx톤, 2023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23.4% 감소하였고, 시장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3년에는 xxx%로 21.3%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3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0.8%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동종물품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2020년 xxx%에서 2023년 xxx%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8.4%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6) 조사보고서 pp.33~35.

37) 조사보고서 pp.36~37.

나. 가격에 미친 영향

조사보고서³⁸⁾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20년 xxx천원, 2023년 xxx천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3.5% 상승하였고, 국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20년 xxx천원, 2023년 xxx천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심사대상기간 중 재심사대상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동종물품 대비 2020년 xxx천원, 2021년 xxx천원, 2022년 xxx천원, 2023년 xxx천원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

조사실은 덤핑방지조치 부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치유 또는 지속되었는지 여부와 덤핑방지조치 종료가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국내산업의 생산량 및 가동률, 판매 및 재고, 시장점유율,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윤, 고용 및 임금, 생산성,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등의 경영지표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1) 생산량 및 가동률

조사보고서³⁹⁾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동종물품 생산능력은 연간 xxx톤 수준을 유지하였고, 생산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1년 xxx톤으로 증가했으나 2022년 xxx톤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 xxx톤으로 다시 증가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7% 감소하였

38) 조사보고서 p.37.

39) 조사보고서 p.38.

다. 이에 따라 가동률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상승했으나, 2022년 xxx%로 감소하였고, 2023년 xxx%로 다시 증가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10.7%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판매 및 재고

조사보고서⁴⁰⁾에 의하면, 동종물품의 총출하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1년 xxx톤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 xxx톤으로 감소 후, 2023년 xxx톤으로 증가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6.1% 감소하였고,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1년 xxx톤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 xxx톤, 2023년 xxx톤으로 감소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0.8% 감소하였다. 동종물품의 기말재고는 재심사대상기간 중 2020년 xxx톤에서 2023년 xxx톤으로 연평균 3.2% 증가하였고, 총출하 대비 재고율은 2020년 xxx%에서 2023년 xxx%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1.4%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시장점유율

조사보고서⁴¹⁾에 의하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2022년 xxx%, 2023년 xxx%로 하락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8.4%p 상승하였고, 재심사대상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3년 xxx%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21.3%p 하락하였고, 기타국產 수입물품의 시장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3년 xxx%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12.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0) 조사보고서 p.39.

41) 조사보고서 p.40.

(4)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조사보고서⁴²⁾에 의하면, 동종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2020년 xxx천원에서 2021년 xxx천원, 2022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였으나, 2023년 xxx천원으로 하락하여 재심사대상 기간 중 연평균 12.2% 상승하였다. 동종물품의 톤당 제조원가는 2020년 xxx천원에서 2021년 xxx천원, 2022년 xxx천원으로 상승하였으나, 2023년 xxx천원으로 하락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12.9% 상승하였다.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서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으로 하락하였으나, 2022년 xxx%, 2023년 xxx%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이윤

조사보고서⁴³⁾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내수부문 영업이익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으로 증가, 2022년 xxx백만원으로 감소되었고, 2023년에는 △xxx백만원으로 적자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2022년 xxx%로 하락한 후, 2023년 △xxx%로 적자 전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조사보고서 p.41.

43) 조사보고서 p.42.

(6) 고용 및 임금

조사보고서⁴⁴⁾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연평균 고용인원은 2020년 xxx명에서 2023년 xxx명으로 증가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0.2% 증가하였다. 1인당 평균임금은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3년 xxx백만원으로 증가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생산성

조사보고서⁴⁵⁾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1인당 동종물품 생산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1년 xxx톤, 2022년 xxx톤, 2023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4.9% 감소하였고, 1인당 매출액도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xxx백만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5.1% 증가하였다. 1인당 부가가치는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1년 xxx백만원, 2022년 xxx백만원, 2023년 xxx백만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8)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조사보고서⁴⁶⁾에 의하면, 설비투자액은 대부분이 기계장비 구입으로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3년 xxx백만원으로 감소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3.8% 감소하였고, 연구개발비는 2020년 xxx백만원에서 2023년 xxx백만원으로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연평균 18.1% 감소되었다.

44) 조사보고서 pp.42~43.

45) 조사보고서 p.43.

46) 조사보고서 p.44.

(9) 자본조달능력

조사보고서⁴⁷⁾에 의하면, 국내산업은 2021년 영업이익이 회복되었으나, 2022년 영업이익 감소 후, 2023년 적자 전환되어 영업활동을 통한 자본조달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영향

(1) 재심사대상물품 이외의 기타국산 수입물량 및 가격

조사보고서⁴⁸⁾에 의하면,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재심사대상물품 이외 기타국산 수입 물량은 2020년 xxx톤, 2021년 xxx톤, 2022년 xxx톤, 2023년 xxx톤으로 연평균 38.1%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타국산 물품의 시장점유율도 2020년 xxx%에서 2023년 xxx%로 재심사 대상기간 동안 12.8%p 상승하였다.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기타국산 물품의 톤당 판매가격은 재심사대상물품 및 국내동종 물품 판매가격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7) 조사보고서 p.44.

48) 조사보고서 p.45.

(2) 국내 소비의 변화

조사보고서⁴⁹⁾에 의하면, 국내소비는 2020년 xxx톤에서 2023년 xxx톤으로 재심사대상 기간 중 연평균 6.0% 감소하고, 동종물품의 내수판매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3년 xxx톤으로 연평균 0.8% 감소하였는데, 덤핑방지조치의 영향으로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이 감소(연평균 Δ 23.4%)하여 국내소비 감소가 국내산업에 미친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수출실적

조사보고서⁵⁰⁾에 의하면, 국내산업의 수출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3년 xxx톤으로 연평균 10.7% 감소하였고, 재심사대상기간 중 총출하량에서 수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xxx%에서 2023년 xxx%로 4.9%p 감소하여, 국내동종물품 내수판매물량 감소에 영향을 줄 여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주요 원자재 가격

조사보고서⁵¹⁾에 의하면, 국내 동종물품의 단위당 제조원가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xxx%에서 xxx% 수준이고, 주요 원재료는 니켈, 크롬, 스크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심사대상기간 중 니켈의 톤당 가격은 연평균 10.8% 상승, 크롬의 톤당 가격은 연평균 12.7% 상승, 스크랩의 톤당 가격은 연평균 1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9) 조사보고서 p.46.

50) 조사보고서 p.47.

51) 조사보고서 p.41, 48.

재심사대상기간 중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과 같은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원재료비의 변동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에는 덤핑방지조치의 효과로 동종물품 판매가격 상승률(20.7%)이 단위당 제조원가 상승률(17.3%)보다 높았으나, 2022년에는 상승률이 낮았고, 2023년의 경우 동종물품 판매가격의 하락폭(Δ 12.5%)이 단위당 제조원가 하락폭(Δ 11.9%)에 비해 컸었는데 이는 기타국산 수입물량 증가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 종합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3년 xxx톤으로 연평균 23.4% 감소한데 반해, 동종물품 내수판매량은 2020년 xxx톤에서 2021년 xxx톤으로 증가하였으나, 2022년 xxx톤, 2023년 xxx톤으로 감소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연평균 0.8% 감소하였고, 동종물품 시장점유율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2022년 xxx%, 2023년 xxx%로 하락하여 재심사대상기간 중 8.4%p 상승하였으며, 내수 영업이익률은 2020년 xxx%에서 2021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2022년 xxx%로 하락한 후, 2023년 Δ xxx%로 적자 전환된 것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 이후 재심사대상물품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여, 동종물품 내수 판매량과 시장점유율, 영업이익률 등 국내산업 피해지표가 회복되었으나, 기타국산 물품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덤핑방지조치의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판정한다.

3. 덩핑방지조치 종료시 국내산업피해의 전망

가.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조사보고서⁵²⁾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여유생산능력은 중국 및 대만의 재심사대상 공급자만 고려하더라도 xxx천톤으로 2023년 국내소비물량(xxx천톤)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재심사대상공급자인 인니청산 및 그 관계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생산능력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광칭 및 루이푸의 가동률이 100%를 훨씬 초과(최대 xxx%)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조사실은 제출된 생산능력 및 가동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MR자료에 의하면 재심사대상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 슬라브의 인도네시아 생산능력이 2020년 xxx천톤에서 2023년 xxx천톤으로 연평균 29.4% 증가하고, 가동률은 2020년 xxx%에서 2023년 xxx%로 21.3%p 하락한 점을 고려할 때 재심사대상물품 생산여력이 상당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2023년 기준 여유생산능력은 중국 및 대만의 재심사대상공급자만 고려하더라도 2023년 국내소비물량을 초과하고, 중국의 재심사대상 공급자가 중국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는 점, 인도네시아도 생산여력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덩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될 경우 對한국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52) 조사보고서 pp.50~52.

나.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가격비교 및 전망

조사보고서⁵³⁾에 의하면, 2023년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은 덤핑방지관세를 포함 하더라도 2020년 동종물품의 xxx%에서 2021년 xxx%, 2022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2023년 xxx%로 하락하였으며, 재심사대상기간 동안 저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덤핑방지관세를 제외한 재심사대상물품의 판매가격은 2020년 동종물품의 xxx%에서 2021년 xxx%, 2022년 xxx%로 상승하였으나 2023년 xxx%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가격약속 시행으로 덤핑방지관세 포함 여부에 따른 재심사대상물품 판매가격 차이는 크지 않으나, 덤핑방지조치 시행 이후 동종물품 가격 대비 재심사대상물품 가격비율이 상승하였다가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 조치 종료시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의 가격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한다.

다. 제3국 수입규제조치 현황

조사보고서⁵⁴⁾에 의하면, 중국강철공업협회는 원심 신청 시 조치 중이던 국가 중 베트남과 인도는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조치를 종료한 바, 덤핑방지조치를 종료시 중국 등 재심사대상물품의 한국향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53) 조사보고서 p.53.

54) 조사보고서 pp.54~55.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원심 조치 이후, 베트남과 인도가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종료하였으나, 인도네시아산 냉연제품에 대해 EU는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를, 태국은 덤핑방지관세를, 브라질은 상계관세를 신규로 부과하여, 미국, EU,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이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해 총 25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은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대한민국 수출 확대 가능성의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판정한다.

라.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조사보고서⁵⁵⁾에 의하면, 중국강철공업협회는 2020년 기준 EU, 한국, 일본 등의 1인당 스테인리스강 소비량은 32kg이지만, 중국은 18kg에 불과하고, 세계 스테인리스강 조강 생산량은 철강 생산량의 3.9%를 차지하는 반면 중국은 2.9%에 불과하여, 향후 중국의 스테인리스강 내수소비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 국무원이 2022년 12월 발표한 「내수 확대 전략 계획 개요(2022-2035년)」와 2024년 3월 실시한 「대규모 장비 갱신 및 소비재 교환 촉진 행동 계획」을 근거로 스테인리스강 소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2024년 8월 「철강 생산능력 교체 중단에 관한 산업정보기술부 통지」를 통해 신규 제철소 건설을 금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이 검토한 바와 같이, 향후, 중국강철공업협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국의 1인당 스테인리스강 소비량 증가, 중국정부의 내수확대 계획, 대규모 장비 갱신 계획, 신규제철소 건설 금지 정책으로 과잉 생산능력이 해소되고, 이후 재심사를 통해 여유생산능력 등 객관적 지표가 검토되어 덤핑방지조치가 종료되더라도 덤핑 및 산업

55) 조사보고서 pp.56~57.

피해의 재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정한다.

4.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검토 종합

위원회는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 피해에 미친 영향, 재심사대상물품 공급국의 생산능력 및 수출여력, 제3국의 수입규제조치 현황,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가격 비교 및 전망 등을 바탕으로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을 검토한 조사실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위원회는 원심의 덤핑방지조치로 재심사대상물품의 수입량은 감소한 점, 재심사대상국의 여유생산능력이 상당한 점, 덤핑방지조치 종료시 재심사대상물품과 동종 물품의 가격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미국, EU,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이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해 총 25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IV. 가격약속 제의 내용 및 검토

위원회는 WTO 반덤핑협정 제8조, 제11.3조, 제11.5조, 관세법 제54조, 제56조제1항, 관세법시행령 제68조, 제70조 등에 따라 재심사대상공급자의 가격약속 제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1. 가격약속 제의 내용

가. 가격약속 제의 재심사대상공급자

재심사 시 가격약속을 제의한 재심사대상공급자는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니청산, 유스코, 왈신 5개사로 원심의 가격약속 대상자와 동일하다.

나. 가격약속 제의 내용

(1) 산시타이강

2024.12.27. 최저가격 산정은 원심과 동일하고 연간 수출제한물량은 원심의 xxx톤에서 xxx톤으로 상향한 가격약속 제의서를 제출하였다.

산시타이강은 연간 수출제한물량 상향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지 않아 조사실과 실무 협의 후 2025.1.9. 원심의 연간 수출제한물량과 동일한 xxx톤으로 수정 제의하였다.

이후, 2025.1.10. 최저가격 산정과 연간 수출제한물량은 원심과 동일하고 약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검증 허용, 가격약속 대상 및 비대상물품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또는 증빙자료 구비 등의 약속 조건을 추가한 최종 제의서를 제출하였다.

(2) 리스코

2024.12.31. 원심과 동일한 최저가격 산정 및 연간 수출제한물량의 조건으로 가격약속 유지를 희망한다는 가격약속 제안에 대한 공문을 제출하였다.

이후, 2025.1.10. 최저가격 산정과 연간 수출제한물량은 원심과 동일하고 약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검증 허용, 가격약속 대상 및 비대상물품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또는 증빙자료 구비 등의 약속 조건을 추가한 최종 제의서를 제출하였다.

(3) 인니청산

2024.12.24. 원심과 동일한 최저가격 산정 및 연간 수출제한물량의 조건으로 가격약속 유지를 희망한다는 가격약속 제안에 대한 공문을 제출하였다.

이후, 2025.1.15. 최저가격 산정과 연간 수출제한물량은 원심과 동일하고 약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검증 허용, 가격약속 대상 및 비대상물품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또는 증빙자료 구비 등의 약속 조건을 추가한 최종 제의서를 제출하였다.

(4) 유스코

2024.12.24. 원심과 동일한 최저가격 산정 및 연간 수출제한물량의 조건으로 가격약속 유지를 희망한다는 가격약속 제안에 대한 공문을 제출하였다. 다만, 관계사 xxx을 구조적 또는 상업적으로 밀접하지 않다는 이유로 가격약속 수출자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조사실은 관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⁵⁶⁾ 따라 유스코가 xxx의 지분을 xxx% 이상 보유하고 있어 관계사임이 분명하다는 의견을 2025.1.3.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다.

2025.1.8. 유스코는 원심과 동일한 최저가격 산정 및 연간 수출제한물량 등의 조건으로 가격약속 유지를 희망한다는 수정된 제의 공문을 제출하였다.

이후, 2025.1.15. 최저가격 산정과 연간 수출제한물량은 원심과 동일하고 약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검증 허용, 가격약속 대상 및 비대상물품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또는 증빙자료 구비 등의 약속 조건을 추가한 최종 제의서를 제출하였다.

(5) 왓신

2024.12.31. 원심과 동일한 최저가격 산정 및 연간 수출제한물량의 조건으로 가격약속 유지를 희망한다는 가격약속 제안에 대한 공문을 제출하였다.

이후, 2025.1.15. 최저가격 산정과 연간 수출제한물량은 원심과 동일하고 약속의 이행

56) 제23조제1항제4호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

여부에 관한 검증 허용, 가격약속 대상 및 비대상물품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또는 증빙자료 구비 등의 약속 조건을 추가한 최종 제의서를 제출하였다.

2. 가격약속 제의에 대한 국내생산자 의견

요청인 포스코는 2024.3.13. 종료재심사 요청서를 통해 가격약속을 포함한 원심의 덤핑방지조치를 5년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사보고서⁵⁷⁾에 의하면, 요청인은 2024.11.13. 조사실과의 회의에서 원심과 동일한 조건의 가격약속 연장을 요청하였고, 2025.2.4. 이해관계인 회의에서도 5개 재심사대상 공급자의 원심과 동일한 조건의 가격약속 제의에 대해 “이견없음”으로 조사실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장발언을 통해 원심과 동일한 가격약속 연장을 재차 요청하였다.

3. 가격약속 제의에 대한 검토

가. 제의시기의 적정성 여부

관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은 약속을 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최종판정 45일 전에 가격약속 제의에 대한 공문을 제출한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니청산, 유스코, 왈신 5개사의 가격약속 제의시기는 적절한 것으로 결정한다.

⁵⁷⁾ 조사보고서 p.64

나. 가격약속의 실효성 상실 또는 우려 여부

조사실은 원심의 가격약속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4.12.1.~12.11.까지 가격약속 현지실사 및 온라인실사를 실시하였다.

(1) 산시타이강

조사실은 2024.12.2. 산시타이강 및 그 관계사에 대한 현지실사를 산시타이강 상해 법인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산시타이강은 실사 전 답변서를 통해 2022년 수출물량 중 9건의 보고 누락사항에 대한 자료를 조사실에 제출하였다. 보고 누락물량은 총 xxx톤이었으며 산시타이강의 연간 수출제한물량인 xxx톤의 xxx%이다.

이에 대해, 산시타이강은 조사실의 현지실사 시 가격약속 이행 초기단계였고 바오 스틸과의 합병 후 회계시스템 통합,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설명하고 향후 가격약속 이행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조사실은 산시타이강이 연간 수출제한물량을 준수하고 있으며 최저가격 산정도 샘플 테스트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였다.

산시타이강은 분기별 최저가격 적용 기준시점은 현지 선적일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조사실 확인 결과 일부 수출건은 한국 수입신고일로 적용하는 등 일부 혼동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실은 9건의 샘플 수출건에 대해 수출물량, 최저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했고 최저가격 신고 관련 FOB가격의 CIF가격으로의 환산에 대해 검증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였다.

(2) 리스크

조사실은 2024.12.11. 리스크에 대한 온라인실사를 대리인인 주식회사 리인타를 방문 하여 실시하였다.

조사실은 실사 답변서를 통해 연간 수출제한물량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최저 가격 산정에 대해서도 샘플테스트 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10건의 샘플 수출건에 대해 수출물량, 최저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최저가격 신고 관련 FOB가격의 CIF가격으로의 환산에 대해 검증한 결과 수출건별로 환산방법은 상이하였으나 최저가격 이상으로 한국에 수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조사실은 리스크에 CIF가격 환산은 통일성있게 정확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리스크는 향후 최대한 정확히 환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3) 인니청산

조사실은 2024.12.3. 인니청산에 대한 현지실사를 청산그룹 상해오피스를 방문하여 실시하였다.⁵⁸⁾

조사실은 현지실사 답변서를 통해 인니청산의 연간 수출제한물량 준수를 확인하고 최저가격 산정에 대해서도 샘플테스트를 통해 이상없음을 확인하였다.

조사실은 5건의 샘플 수출건에 대해 수출물량, 최저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추가 수출건에 대해 시스템 관리 현황, 상업송장 등을 확인하려 했으나 인니청산은 현지실사 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인니청산은 한국 수출물량은 가격약속 대상물품에 대해서만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고 인니청산의 회계시스템은 회계입력일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송장번호, 선적일 등으로 조회가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조사실은 가격약속의 검증을 위해서는 상업송장, 선적일 등의 기준으로 한국으로 수출되는 대상 및 비대상물품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인니청산에 전달했다.

인니청산은 현지실사 후 의견서를 통해 현지실사 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수출건에 대해 상업송장, 수입신고필증 등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가격약속 대상 및 비대상물품에 대해 품목별 판매현황을 관리하고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58) 조사실은 현지실사 이동거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인니청산의 한국 판매자료가 있는 청산그룹 상해 오피스에서 현지실사를 진행하였다.

밝혔다.

(4) 유스코

조사실은 2024.12.6. 유스코에 대한 현지실사를 대만 가오슝 법인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조사실은 현지실사 답변서를 통해 유스코의 연간 수출제한물량 준수를 확인하였고 최저가격 산정에 대해서도 샘플테스트를 통해 이상없음을 확인하였다.

유스코는 실사 전 답변서를 통해 2023.1분기, 2024.2분기 수출물량 집계 오류에 대한 수정자료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실에서 확인한 결과 집계 오류는 있었으나 연간 수출제한 물량은 준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실은 유스코 관계사인 와이씨엘의 수출물량 xxx톤이 보고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고 유스코는 담당자의 실수로 보고 누락 했음을 인정했다

12건의 샘플 수출건에 대해 수출물량, 최저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였다.

(5) 왈신

조사실은 2024.12.5. 왈신에 대한 현지실사를 대만 타이난법인을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조사실은 가격약속 보고서와 현지실사 답변서를 통해 왈신이 2023년도 xxx톤을 초과하여 한국에 수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왈신은 실무담당자가 송장번호 xxx 내역 중 "316L, 6mm*1555mm xxx톤, 316L, 3mm*1555mm xxx톤"을 비대상 물품으로 착각하여 산정 누락했다고 설명하였다. 왈신의 산정누락한 물량은 xxx톤이며 이중 수출초과물량은 xxx톤이다.

조사실 확인 결과, 3mm*1555mm xxx톤은 실제로 가격약속 대상이 아닌것을 확인하여 실제 초과물량은 xxx톤으로 왈신의 수출제한물량 xxx만톤의 xxx%임을 확인하였다.⁵⁹⁾

최저가격 산정은 샘플테스트 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였다.

조사실은 11건의 샘플 수출건에 대해 수출물량, 최저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수입신고일이 3분기이나 2분기 거래건으로 한국 정부에 보고하는 등 일부 자료관리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 가격약속 제의 종합 검토

산시타이강 등 5개 제심사대상공급자는 최저가격 산정 및 연간 수출제한물량이 원심과

59) 2023년 왈신의 수출신고물량은 xxx톤이며 산정누락 물량을 합할 경우 왈신의 총 수출물량은 xxx톤임. 총 수출물량에서 가격약속 비대상 물량 xxx톤 제외시 실제 초과물량은 xxx톤임

동일한 조건으로 가격약속 제의서를 조사실에 제출하였다.

조사실은 산시타이강, 유스코, 왈신 3개사는 수출물량 보고 누락, 연간 수출제한물량 초과 등 가격약속 위반 소지가 있으나 실사전 자체 신고하고 연간 수출제한물량의 1% 미만으로 소량인 점,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상물품만을 엑셀로 관리하여 현지실사 시 원활히 대응하지 못한 인니청산은 실사 후 의견서를 통해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대상 및 비대상물품에 대한 관리방안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조사실은 가격약속 관련 이행 강화를 위해 약속의 이행여부에 관한 검증 허용, 가격약속 대상 물품 및 비대상 물품에 대한 기록·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또는 증빙자료 구비 등의 약속 조건을 추가하여 재심사 가격약속 제의서를 보완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원심과 동일한 최저가격 산정 및 연간 수출제한물량 등 제의 내용, 약속 이행 강화를 위한 제의서 보완 등을 고려하여 재심사 가격약속 제의 수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4. 이해관계인 의견 검토

가. 재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

조사보고서⁶⁰⁾에 의하면, 2025.2.4., 최종 판정 주요사항에 대한 온라인 이해관계인 회의를 개최한 결과 5개 재심사대상공급자 중 산시타이강, 인니청산은 회의 참석하였고 참석한 2개 공급자 동일하게 현장 발언을 통해 원심과 동일한 가격약속이 유지되기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리스코, 유스코, 왈신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별도 발언요지나 의견서 제출은 없었다.

나. 가격약속 관련 냉연, 열연 쿼터분리에 대한 의견 검토

조사보고서⁶¹⁾에 따르면 재심사 기간 중 xxx 등 일부 기업은 가격약속 제한물량에 대해 냉연, 열연 쿼터를 분리해 줄것을 조사실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실은 임의로 쿼터를 분리·조정하여 냉연의 수입비중이 높게 될 경우 국내 냉연 제조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열연의 수입비중이 높을 경우 냉연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 조사·판정 당시 조사대상물품이었던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을 냉·열연으로 분리할 근거 및 기준이 없으며, 쿼터를 임의 배분할 경우 국내 수요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60) 조사보고서 p.71

61) 조사보고서 p.72

따라서, 위원회는 재심사 가격약속 시 냉연, 열연의 쿼터는 분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V. 가격약속 및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1. 가격약속 및 최종 덤핑률

가. 가격약속

조사보고서⁶²⁾에 의하면, 조사실은 2021년 가격약속 시행 이후 조사대상물품의 수입량 감소, 판매가격 상승 등의 가격약속으로 인한 덤핑방지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가격약속 실사를 통해 연간 수출제한물량, 최저가격 준수 등이 전반적으로 적절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일부 수출자의 경미한 약속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 받고 재심사 가격약속 제의서에서 가격약속 검증 강화, 가격약속 대상 물품 및 비대상 물품에 대한 기록·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가격약속 준수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실은 가격약속을 제외한 산시타이강, 리스크, 인니청산, 유스코, 왈신 5개 재심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현행 가격약속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다.

⁶²⁾ 조사보고서 p.73

따라서, 위원회는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니청산, 유스코, 왈신 5개 재심사대상공급자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원심 수준의 재심사 가격약속 제의 수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나. 최종덤핑률

조사보고서⁶³⁾에 따르면 조사실은 가격약속을 유지하기로 한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니청산, 유스코, 왈신에 대해서는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률은 원심 조사에서 산정된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중국 24.83%, 인도네시아 29.68%, 대만 9.07%를 적용하였다.

위원회는 조사실 검토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니청산, 유스코, 왈신에 대해서는 최종덤핑률을 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밖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원심 조사에서 산정된 그 밖의 공급자 덤핑률인 중국 24.83%, 인도네시아 29.68%, 대만 9.07%를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63) 조사보고서 p.73

2.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

위원회는 덤핑방지조치 종료시에는 국내산업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건의 산업피해구제수준으로 원심의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인 25.82%를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3. 가격약속 및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위원회는 WTO규정 제9.1조 반덤핑관세의 부과 및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65조 ①항의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규정에 따라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 수준 중 낮은 것을 적용함에 따라 본 건의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을 아래 표와 같이 공급자별로 9.07% ~ 25.82%로 부과하기로 판정한다.

<최종 덤핑률 수준과 국내산업피해 구제수준의 비교 >

공급국	피요청인(공급자)	최종 덤핑률	산업 피해율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
중국	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산시타이강”) 및 그 관계사 - Tianjin Taigang & TPCO Stainless Steel Co., Ltd. (“톈진타이강”) - 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Precision Strip Co. Ltd. (“산시정밀”)	(가격약속)	25.82%	(가격약속)
	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리스코”)	(가격약속)		(가격약속)
	그 밖의 공급자	24.83%		24.83%
인도네시아	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인니청산”) 및 그 관계사 - 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광칭”) - 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루이푸”)	(가격약속)	25.82%	(가격약속)
	그 밖의 공급자	29.68%		25.82%
대만	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유스코”) 및 그 관계사 - Yieh Mau Corp. (“이예마우”) - Tang Eng Iron Works Co., Ltd. (이하 “탕양”)	(가격약속)	25.82%	(가격약속)
	Walsin Lihwa Corporation (“왈신”)	(가격약속)		(가격약속)
	그 밖의 공급자	9.07%		9.07%

VI.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⁶⁴⁾ 및 관세법 제56조제3항⁶⁵⁾ 등 반덤핑 관련 국내의 규정에서는 재심으로 인한 덤핑방지조치의 효력을 5년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EU·중국 및 인도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가도 WTO 반덤핑협정과 동일하게 덤핑방지조치 기간을 5년으로 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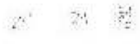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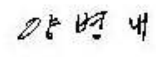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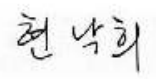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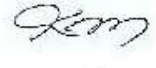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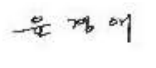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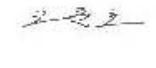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본 종료재심사건의 재심사대상물품에 대해 본 의결서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향후 5년 동안 가격약속 시행과 9.07% ~ 25.82%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64) WTO 반덤핑협정 제11.3조 : (생략) 모든 확정 반덤핑관세는 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결된다 (후략)

65) 관세법 제56조제3항 : 덤핑방지조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덤핑방지조치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후략)

무역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2025년 02월 20일

위원장	이재형	
상임위원	양병내	
위원	현낙희	
위원	조영재	
위원	강준하	
위원	권현호	
위원	윤경애	
위원	고준호	

적용 법령

-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28조
- 관세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WTO 반덤핑협정 제11조

붙임 자료

-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1차) 최종보고서

[별지] 피요청인의 주소

1. 산시타이강 및 관계사

(1)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 No. 2 Jiancaoping Street, Taiyuan, Shanxi Province

(2) 톈진타이강(Tianjin Taigang & TPCO Stainless Steel Co., Ltd.)

: No. 61 Haibin 15th Road, Free Trade Zone of Tianjin New Port, Tianjin,
P.R.China

(3) 산시정밀(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Precision Strip Co. Ltd.)

: No. 2 Zhong Xin Bei Street, Xiaodian District, Taiyuan City, Shanxi Province

2.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

: NO.1 Lianguang Road, East Section, Economy and Technology Development Zone,
Guangzhou, China

3. 인니청산 및 관계사

(1)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 Gedung PT IMIP Lantai 3, Jl. Batu Mulia no. 8, RT.16/RW.7, Meruya Utara, Kec.
Kembangan, Kota Jakarta Bar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1620

(2) 광칭(PT Indonesia Guang Ching Nickel and Stainless Steel Industry)

: GEDUNG SOPO DEL OFFICE TOWER A, LANTAI 26, JL. MEGA KUNINGAN
BARAT III LOT 10 1-6, RT.003 RW.003, KEL.KUNINGAN TIMUR, KEC.SETIA
BUDI, JAKARTA SELATAN 12950, INDONESIA

(3) 루이푸(PT Indonesia Ruipu Nickel and Chrome Alloy)

: Gedung IMIP lt. 3, Jl. Batu Mulia No.8 RT.007/RW.007, Meruya Utara Kembangan,
Kota Adm Jakarta Barat, DKI Jakarta 11620.

4. 유스코 및 관계사

(1)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 No.600, Xinglong Street, Jiaxing Village, Gangshan District, Kaohsiung City 82057,
Taiwan

(2) 이예마우(Yieh Mau Corporation)

: 345, Shun An Rd., Lu Chu District, Kaohsiung City 821, Taiwan, R.O.C.

(3) 탕영(Tang Eng Iron Works Co., Ltd.)

: No. 4, Yanhai 2nd Rd., Xiaogang Dist., Kaohsiung City 812050, Taiwan

5.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

: 25F., No.1, Songzhi Rd., Xinyi Dist., Taipei City 110411, Taiwan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재심사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 통지

1.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17호, 2024.5.17.) 관련
입니다.

2. WTO 반덤핑협정 제12.2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71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제457차
무역위원회(2025.2.20.)에서 의결한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1차) 최종판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드립니다.

- 붙임 1. 최종판정의결서 공개본. 1부.
- 2. 최종조사보고서 공개본. 1부. 끝.

무역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주한 중국 대사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공업사무관	이배화	과장	전결 2025. 3. 14.
			김민정
협조자			
시행	덤핑조사과-232	(2025. 3. 14.)	접수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 http://www.motie.go.kr
전화번호	044-203-5872	팩스번호 044-203-4813	/ bhbk@motie.go.kr / 비공개(5)